일련번호 1

용 인 시

통보 및 주의요구

제 목 **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수 조치 소홀**

소 관 기 관 ☆국(○과, ●과)

회 계 연 도 2019년 ~ 2021년

내 용

1. 현황

☆국 ○과와 ●과에서는 농작물의 품질향상,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농가에 ㄱ용수처리기, 폐사가축 처리 장비구입 등 ㄱ용(ㄴ용)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과에서는 1억 3,582만 원(전체 사업비 2억 7,165만 원의 50%), ●과에서는 1억 9,920만 원(전체 사업비 3억 9,848만 원의 50%)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정산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5호에서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ㄱ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제3항[1] [별표 1]에서 해당하는 ㄴ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특례규정 제7조[2](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별표 5]에 해당하는 농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ㄷ사업 추진계획』 6.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액을 지원비율(도비, 시군비, 자부담)에 따라 정산 및 회수하도록 하고 있고, 『ㄹ시책 추진계획』 친환경 ㄷ분야 2.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따르면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ㄴ에 종사하는 자가 ㄴ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 대상이 되는 ㄱ용(ㄴ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감액하여 교부하거나 정산 시 공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1. 12 .13. ~ 12. 27.) 중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과에서는 2019년 ㄱ용수 처리 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자 A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ㅁ 구입에 대한 보조금 1,500,000원(구입비 전체 3,000,000원의 50%)을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272,720원에 대한 보조지분(50%)에 해당되는 136,360원을 공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별표 1] “ㄱ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내역”과 같이 ㅁ 및 ㅂ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ㄱ용수 처리기 구입의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액 12,348,040원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과에서는 2019년 ㅅ 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자 이종권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폐사축처리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 1,000,000원(구입비 전체 20,000,000원의 50%)을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1,818,180원에 대한 보조지분(50%)에 해당되는 909,090원을 공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별표 2] “ㄱ용(ㄴ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내역”과 같이 폐사축처리기, ㄷ 악취제거제 및 ㄴ용 정액희석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ㄱ용(ㄴ용) 기자재 구입의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액 18,113,110원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정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과에서는 ㅁ 및 ㅂ는 ㄱ용수 처리기로서 「농·ㄷ·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별표 5] 의 ㄱ용 기자재에 해당하나, 해당 농기계는 기성품이 아닌 주문 제작으로 단순히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ㄱ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고 정산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에서는 ㄷ분야 지원사업을 추진 시 ㄴ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조비율에 해당되는 부가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정산하였으나, 향후 사업추진 시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 ○과장과 ●과장은**

① 「농·ㄷ·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에 따라 ㄱ용(ㄴ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중 보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통보)**

② 향후 ㄱ용(ㄴ용) 기자재 구입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 시 관련 내용 안내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1] ㄱ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구입품목	영세율 및 면세 적용 기자재명	보조금 정산내역			부가가치세	정당 정산액	보조지분주)
					합계	보조금(50%)	자부담(50%)			
계					271,658,000	135,829,000	135,829,000	24,696,174	128,780,919	**12,348,040**
2019	2019년 ㄱ 지원사업		ㅁ기	ㄱ용수 처리기	3,000,000	1,500,000	1,500,000	272,728	2,727,272	136,360
2019	2019년 ㄱ 지원사업		ㅁ기	ㄱ용수 처리기	3,000,000	1,500,000	1,500,000	272,728	2,727,272	136,360
2019	2019년 ㄱ 지원사업		ㅁ기	ㄱ용수 처리기	2,660,000	1,330,000	1,330,000	241,819	2,418,181	120,900
2019	2019년 ㄱ 지원사업		ㅁ기	ㄱ용수 처리기	3,000,000	1,500,000	1,500,000	272,728	2,727,272	136,36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30,588,000	15,294,000	15,294,000	2,780,726	13,903,637	1,390,36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2020	ㅇ 보조금지급		ㅂ	ㄱ용수 처리기	15,294,000	7,647,000	7,647,000	1,390,363	6,951,819	695,180

주: 부가가치세의 50%(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 원단위 절사)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ㄱ용(ㄴ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구입품목	영세율 및 면세 적용 기자재명	보조금 정산내역			부가세	정당 정산액	**보조자분주)**
					합계	보조금	자부담			
계					398,489,200	199,205,000	199,284,200	36,226,294	334,990,179	**18,113,110**
2019	ㅅ 지원사업		ㅅ	ㅅ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18,181,818	909,090
2019	ㅅ 지원사업		ㅅ	ㅅ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18,181,818	909,090
2020	ㅅ 지원사업		ㅅ	ㅅ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18,181,818	909,090
2020	ㅅ 지원사업		ㅅ	ㅅ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18,181,818	909,090
2020	ㅅ 지원사업		ㅅ	ㅅ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18,181,818	909,090
2020	ㅅ 지원사업		ㅅ	ㅅ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18,181,818	909,090
2020	ㅅ 지원사업		ㅅ	ㅅ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18,181,818	909,090
2020	ㅅ 지원사업		ㅅ	ㅅ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18,181,818	909,090
2020	ㅅ 지원사업		ㅅ	ㅅ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18,181,818	909,090
2020	ㅅ 지원사업		ㅅ	ㅅ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18,181,818	909,090
2021	ㅅ 지원사업		ㅅ	ㅅ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18,181,818	909,090
2020	ㅎ 지원사업		ㅎ	ㄷ 악취제거제	30,000,000	15,000,000	15,000,000	2,727,273	27,272,727	1,363,630
2020	ㅎ 지원사업		ㅎ	ㄷ 악취제거제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9,090,909	909,090
2020	ㅎ 지원사업		ㅎ	ㄷ 악취제거제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9,090,909	909,090
2020	ㅎ 지원사업		ㅎ	ㄷ 악취제거제	20,000,000	10,000,000	10,000,000	1,818,182	9,090,909	909,090
2019	ㄷ 사업		ㅊ	ㅊ	30,030,000	15,000,000	15,030,000	2,730,000	27,300,000	1,365,000
2020	ㄷ 사업		ㅊ	ㅊ	10,019,200	5,000,000	5,019,200	910,836	9,108,364	455,410
2021	ㄷ 사업		ㅊ	ㅊ	48,440,000	24,205,000	24,235,000	4,403,637	44,036,363	2,201,810

주: 부가가치세의 50%(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 원단위 절사)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2

용 인 시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ㄴ·ㄷ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과, ●과)

회 계 연 도 2017~2021년

내 용

1. 업무 개요

☆국 ○과는 ㄴ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ㄴ인 등에게 원예특작 생산지원, 친환경ㄴ 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는 ㄷ환경의 개선, ㄷ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와 가축위생 등 ㄷ발전을 위하여 ㄷ시설 현대화 사업, ㅈ 강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ㄷ농가 등에 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등(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 9. 6. 이하 “보조금 관리기준”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ㄷ식품부 훈령 제352호, 2020. 2. 27. 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취득한 가액 50만 원 이상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표 1]과 같이 정해진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3]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표 1]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 적용기준

구분	사후관리 대상	사후관리 기간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 가능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탄소배출 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설 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업·관리환경 등 고려 ±3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500만 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업·관리환경 등 고려 ±2년)

자료: 기본규정 [별표 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에 따라 작성

또한 보조사업자는 위 법률 및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3) 다만 중요재산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기본규정 별지 19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업 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ㄴ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이번 감사기간(2021. 12. 13.~12. 27.)에 ㄴ·ㄷ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과는 위 법률 및 기본규정에 따라 시·도비 지원사업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및 사업별 여건에 맞게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관리책임자)는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고 ○과는 보고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현황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보조사업지침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표 1]“2017~2020년 ㄴ분야 중요재산 현황”과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568건, 156억 3,546만 원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는 변동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감독부서인 ○과는 사후관리

기간[4]에 맞지 않게 1~3년 차 일부 사업의 중요재산만을 점검하였고, 사업지침에 따른 관리대장과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변경 현황도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감사를 정리하던 중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중요재산 일부에 대해 합동 현장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사업 시행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장소를 변경하거나, 보조금 지원시설(ㅋ)을 미이용하여 타 시군에 보관, 보조사업자의 사망으로 보조금 지원시설(ㅋ)의 확인이 불가하여 보조금의 환수처리[5]가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었다.

[표 2] ㄴ분야 중요재산 사후관리 부실 사례

구분	사례
보조사업장소 변경	2018년 ㄴ벨트기반 구축사업으로 보조사업자 B에게 처인구에 지원한(총 중요재산 금액 896만 원, 보조금 609만 원) ㅋ를 변경승인 없이 현재 다른주소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중요재산 미이용	2018년 ㄴ벨트기반 구축사업으로 보조사업자 C에게 처인구에 지원한(총 중요재산 금액 896만 원, 보조금 609만 원) 이동식 ㅋ를 보조사업자가 건강상 이유로 ㄴ이 불가하다며 임의로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1432번지에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음.
중요재산 확인 불가	2019년 ㅌ으로 보조사업자 D에게 처인구에 지원한(총 중요재산 금액 660만원, 보조금 360만원) 이동식 ㅋ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에 ㅋ가 없었으며, 중요재산의 처리사항을 확인할 수 없게 됨.

자료: 합동 현장점검(2022. 1. 11.~12.) 시 확인한 사항과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함.

4)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5년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함. 다만, 500만 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5) 환수금액 산정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장소)	보조사업 내용	총사업비 (천원)	지원보조금 (천원)	사후관리 기간	폐쇄일	잔여사후 관리기간	환수금* (천원)
D (처인구)	ㅋ	6,600	3,600	2019.07.24. ~2024.07.23.	2020.12.	42개월	2,520

*보조금 환수액 = 보조율 × (잔여 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 × 총사업비 + 이득금)
= 0.545 × (42/60 × 660만 원 + 0) = 252만 원

나. ㄷ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과는 위 법률 및 기본규정에 따라 시·도비 지원사업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및 사업별 여건에 맞게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관리책임자)는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고 ●과는 보고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현황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보조사업지침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표 2]“2017~2020년 ㄷ분야 보조금 중요재산 현황”과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770건, 194억 6,313만 원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는 변동현황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감독부서인 ●과는 사후관리 점검을 미이행하였고, 사업지침에 따른 관리대장과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변경 현황도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감사를 정리하던 중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중요재산 일부에 대해 합동 현장 점검한 결과 [표 3]과 같이 포곡읍 신원리 482-10번지 등 3개소의 농장이 승인 없이 가축사육업을 폐업하여 중요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표 3] 합동 현장 점검 시 확인한 폐쇄 ㄷ농장

번호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장소	총사업비(천원)	지원금액(천원)	중요재산(지원연도)	확인사항
1	-	-	19,500	10,650	암롤박스(2017년) ICT연계 탈취제 자동분사시스템(2019년)	축사없음, 폐업(21.06.24.)
2	-	-	9,000	6,300	암롤박스 2개(2017년)	축사없음, 폐업(19.09.17.)
3	-	-	15,000	7,500	ICT연계 탈취제 자동분사시스템(2019년)	축사없음, 폐업(20.05.21.)

자료: 합동 현장점검(2022. 1. 17.~18.) 시 확인한 사항과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함.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ㄷ농가 중 사후관리 기간 도래 전에 폐업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ㄷ업 등록(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3]“폐업 ㄷ농가 환수금액 산정 내역”과 같이 사후관리 기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처인구 00번지 등 16개소의 농가가 승인 없이 폐업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는 22건, 1억 7,442만 원의 중요재산을 소실하였고, 보조사업자에게 5,383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처분 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시설 및 장비의 설치장소가 실제 설치된 곳이 아닌 보조사업자의 집 주소로 되어 있거나 주소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등 보조사업 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중요재산 66건도 확인되는 등 이처럼 ●과는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국 ○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사업별 지침에 의한 관리대장 등 작성으로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 소홀로 보조금 환수가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축사 철거보상비를 지원하는 부서와 사후관리기간 내 있는 농가에 대하여 보상비 지급 전 사전환수 후 철거비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협의하여 보조금 환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 ○과장과 ●과장은

①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사후관리 기간 내 있는 ㄷ농가의 폐업(폐쇄) 시 사전승인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폐쇄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중요재산의 현황을 관리하고, 사업 시행기관의 승인과 환수처리 등이 필요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2017~2020년 ㄴ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중요재산 내역

(단위: 천원)

번호	사업연도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총계		총 568건, 156억3,546만 원				
1	2017	-	-	-	6,040	-미이행 -하우스 목적 외 사용 확인 필요(ㄲ 미등록)
2	2018	-	-	-	8,962	-미이행 -중요재산 관리 장소 변경승인 필요
3	2018	-	-	-	8,962	-미이행 -보조사업자 건강상의 이유로 ㄴ이 불가하여 타시군에 ㅋ보관 -중요재산 후속조치 필요
4	2018	-	-	-	8,962	-미이행 -ㅋ 목적 외 사용 확인 필요(ㄲ 미등록)
5	2019	-	-	-	6,600	-미이행 -보조사업자 사망, 저온ㅋ 사업부지에 없음 - 중요재산 관련 후속조치 필요
6	2017	-	-	-	40,409	미이행
7	2017	-	-	-	8,900	미이행
8	2017	-	-	-	40,633	미이행
9	2017	-	-	-	89,479	미이행
10	2017	-	-	-	49,858	미이행
11	2017	-	-	-	12,600	미이행
12	2017	-	-	-	45,320	미이행
13	2017	-	-	-	73,949	미이행
14	2017	-	-	-	52,457	미이행
15	2017	-	-	-	25,300	미이행
16	2017	-	-	-	27,900	미이행
17	2017	-	-	-	69,966	미이행
18	2017	-	-	-	83,619	미이행
19	2017	-	-	-	100,453	미이행
20	2017	-	-	-	10,264	미이행
21	2017	-	-	-	48,884	미이행
22	2017	-	-	-	45,425	미이행
23	2017	-	-	-	118,474	미이행
24	2017	-	-	-	9,000	미이행
25	2017	-	-	-	4,000	미이행
26	2017	-	-	-	49,180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27	2017	-	-	-	90,605	미이행
28	2017	-	-	-	48,300	미이행
29	2017	-	-	-	10,264	미이행
30	2017	-	-	-	77,614	미이행
31	2017	-	-	-	77,548	미이행
32	2017	-	-	-	13,800	미이행
33	2017	-	-	-	81,662	미이행
34	2017	-	-	-	26,264	미이행
35	2017	-	-	-	19,794	미이행
36	2017	-	-	-	40,000	미이행
37	2017	-	-	-	15,600	미이행
38	2017	-	-	-	26,264	미이행
39	2017	-	-	-	19,200	미이행
40	2017	-	-	-	31,674	미이행
41	2017	-	-	-	48,106	미이행
42	2017	-	-	-	33,000	미이행
43	2017	-	-	-	33,000	미이행
44	2017	-	-	-	40,920	미이행
45	2017	-	-	-	35,298	미이행
46	2017	-	-	-	38,094	미이행
47	2017	-	-	-	70,080	미이행
48	2017	-	-	-	49,560	미이행
49	2017	-	-	-	120,990	미이행
50	2017	-	-	-	15,850	미이행
51	2017	-	-	-	35,000	미이행
52	2017	-	-	-	35,000	미이행
53	2017	-	-	-	1,775	미이행
54	2017	-	-	-	1,775	미이행
55	2017	-	-	-	1,775	미이행
56	2017	-	-	-	1,775	미이행
57	2017	-	-	-	1,775	미이행
58	2017	-	-	-	1,775	미이행
59	2017	-	-	-	1,775	미이행
60	2017	-	-	-	1,775	미이행
61	2017	-	-	-	1,775	미이행
62	2017	-	-	-	1,775	미이행
63	2017	-	-	-	1,775	미이행
64	2017	-	-	-	1,775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65	2017	-	-	-	1,775	미이행
66	2017	-	-	-	1,775	미이행
67	2017	-	-	-	1,775	미이행
68	2017	-	-	-	20,590	미이행
69	2017	-	-	-	22,100	미이행
70	2017	-	-	-	20,900	미이행
71	2017	-	-	-	30,000	미이행
72	2017	-	-	-	20,600	미이행
73	2017	-	-	-	20,600	미이행
74	2017	-	-	-	20,264	미이행
75	2017	-	-	-	61,981	미이행
76	2017	-	-	-	24,264	미이행
77	2017	-	-	-	32,264	미이행
78	2017	-	-	-	12,000	미이행
79	2017	-	-	-	5,800	미이행
80	2017	-	-	-	22,000	미이행
81	2017	-	-	-	12,000	미이행
82	2017	-	-	-	12,000	미이행
83	2017	-	-	-	12,000	미이행
84	2017	-	-	-	14,230	미이행
85	2017	-	-	-	30,000	미이행
86	2017	-	-	-	29,832	미이행
87	2017	-	-	-	24,000	미이행
88	2017	-	-	-	22,800	미이행
89	2017	-	-	-	48,000	미이행
90	2017	-	-	-	22,000	미이행
91	2017	-	-	-	22,800	미이행
92	2017	-	-	-	22,800	미이행
93	2017	-	-	-	24,000	미이행
94	2017	-	-	-	16,800	미이행
95	2017	-	-	-	22,000	미이행
96	2017	-	-	-	22,800	미이행
97	2017	-	-	-	24,000	미이행
98	2017	-	-	-	12,000	미이행
99	2017	-	-	-	12,000	미이행
100	2017	-	-	-	6,700	미이행
101	2017	-	-	-	8,000	미이행
102	2017	-	-	-	10,300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103	2017	-	-	-	12,000	미이행
104	2017	-	-	-	28,026	미이행
105	2017	-	-	-	13,800	미이행
106	2017	-	-	-	9,400	미이행
107	2017	-	-	-	6,050	미이행
108	2017	-	-	-	7,000	미이행
109	2017	-	-	-	6,972	미이행
110	2017	-	-	-	10,000	미이행
111	2017	-	-	-	9,350	미이행
112	2017	-	-	-	9,680	미이행
113	2017	-	-	-	9,680	미이행
114	2017	-	-	-	5,830	미이행
115	2017	-	-	-	8,140	미이행
116	2017	-	-	-	9,240	미이행
117	2017	-	-	-	10,000	미이행
118	2017	-	-	-	10,000	미이행
119	2017	-	-	-	9,570	미이행
120	2017	-	-	-	9,920	미이행
121	2017	-	-	-	7,700	미이행
122	2017	-	-	-	7,590	미이행
123	2017	-	-	-	7,040	미이행
124	2017	-	-	-	10,000	미이행
125	2017	-	-	-	6,057	미이행
126	2017	-	-	-	10,000	미이행
127	2017	-	-	-	10,000	미이행
128	2017	-	-	-	6,800	미이행
129	2017	-	-	-	8,580	미이행
130	2017	-	-	-	5,830	미이행
131	2017	-	-	-	6,160	미이행
132	2017	-	-	-	5,830	미이행
133	2017	-	-	-	6,050	미이행
134	2018	-	-	-	79,520	미이행
135	2018	-	-	-	23,370	미이행
136	2018	-	-	-	21,264	미이행
137	2018	-	-	-	15,000	미이행
138	2018	-	-	-	49,300	미이행
139	2018	-	-	-	10,670	미이행
140	2018	-	-	-	30,600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141	2018	-	-	-	10,264	미이행
142	2018	-	-	-	49,520	미이행
143	2018	-	-	-	28,354	미이행
144	2018	-	-	-	12,230	미이행
145	2018	-	-	-	18,376	미이행
146	2018	-	-	-	71,100	미이행
147	2018	-	-	-	35,500	미이행
148	2018	-	-	-	36,300	미이행
149	2018	-	-	-	25,399	미이행
150	2018	-	-	-	21,780	미이행
151	2018	-	-	-	8,000	미이행
152	2018	-	-	-	15,600	미이행
153	2018	-	-	-	48,500	미이행
154	2018	-	-	-	30,720	미이행
155	2018	-	-	-	9,264	미이행
156	2018	-	-	-	89,290	미이행
157	2018	-	-	-	30,000	미이행
158	2018	-	-	-	55,533	미이행
159	2018	-	-	-	88,700	미이행
160	2018	-	-	-	307,140	미이행
161	2018	-	-	-	109,810	미이행
162	2018	-	-	-	80,542	미이행
163	2018	-	-	-	92,208	미이행
164	2018	-	-	-	42,044	미이행
165	2018	-	-	-	84,362	미이행
166	2018	-	-	-	65,700	미이행
167	2018	-	-	-	78,870	미이행
168	2018	-	-	-	26,288	미이행
169	2018	-	-	-	32,660	미이행
170	2018	-	-	-	49,900	미이행
171	2018	-	-	-	22,286	미이행
172	2018	-	-	-	206,620	미이행
173	2018	-	-	-	87,480	미이행
174	2018	-	-	-	44,900	미이행
175	2018	-	-	-	27,280	미이행
176	2018	-	-	-	12,600	미이행
177	2018	-	-	-	76,680	미이행
178	2018	-	-	-	42,210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179	2018	-	-	-	34,930	미이행
180	2018	-	-	-	23,170	미이행
181	2018	-	-	-	42,000	미이행
182	2018	-	-	-	14,340	미이행
183	2018	-	-	-	26,663	미이행
184	2018	-	-	-	44,833	미이행
185	2018	-	-	-	20,264	미이행
186	2018	-	-	-	30,092	미이행
187	2018	-	-	-	13,264	미이행
188	2018	-	-	-	36,300	미이행
189	2018	-	-	-	14,784	미이행
190	2018	-	-	-	43,890	미이행
191	2018	-	-	-	20,600	미이행
192	2018	-	-	-	40,600	미이행
193	2018	-	-	-	40,600	미이행
194	2018	-	-	-	20,264	미이행
195	2018	-	-	-	20,264	미이행
196	2018	-	-	-	20,600	미이행
197	2018	-	-	-	20,600	미이행
198	2018	-	-	-	20,600	미이행
199	2018	-	-	-	20,600	미이행
200	2018	-	-	-	25,700	미이행
201	2018	-	-	-	15,600	미이행
202	2018	-	-	-	24,000	미이행
203	2018	-	-	-	6,000	미이행
204	2018	-	-	-	27,600	미이행
205	2018	-	-	-	36,000	미이행
206	2018	-	-	-	43,116	미이행
207	2018	-	-	-	18,000	미이행
208	2018	-	-	-	24,000	미이행
209	2018	-	-	-	65,400	미이행
210	2018	-	-	-	3,600	미이행
211	2018	-	-	-	7,200	미이행
212	2018	-	-	-	23,760	미이행
213	2018	-	-	-	39,168	미이행
214	2018	-	-	-	36,000	미이행
215	2018	-	-	-	4,590	미이행
216	2018	-	-	-	21,600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217	2018	-	-	-	12,000	미이행
218	2018	-	-	-	3,300	미이행
219	2018	-	-	-	3,300	미이행
220	2018	-	-	-	2,530	미이행
221	2018	-	-	-	8,962	미이행
222	2018	-	-	-	49,475	미이행
223	2018	-	-	-	8,962	미이행
224	2018	-	-	-	8,962	미이행
225	2018	-	-	-	8,962	미이행
226	2018	-	-	-	8,962	미이행
227	2018	-	-	-	8,962	미이행
228	2018	-	-	-	16,425	미이행
229	2018	-	-	-	8,962	미이행
230	2018	-	-	-	6,600	미이행
231	2018	-	-	-	20,000	미이행
232	2018	-	-	-	20,000	미이행
233	2018	-	-	-	10,718	미이행
234	2018	-	-	-	19,999	미이행
235	2018	-	-	-	1,700	미이행
236	2018	-	-	-	25,865	미이행
237	2018	-	-	-	10,000	미이행
238	2018	-	-	-	10,000	미이행
239	2018	-	-	-	6,000	미이행
240	2018	-	-	-	10,000	미이행
241	2018	-	-	-	5,720	미이행
242	2018	-	-	-	9,570	미이행
243	2018	-	-	-	7,700	미이행
244	2018	-	-	-	5,300	미이행
245	2018	-	-	-	9,900	미이행
246	2018	-	-	-	5,940	미이행
247	2018	-	-	-	6,270	미이행
248	2018	-	-	-	7,538	미이행
249	2018	-	-	-	21,450	미이행
250	2018	-	-	-	6,270	미이행
251	2019	-	-	-	12,264	미이행
252	2019	-	-	-	41,528	미이행
253	2019	-	-	-	32,000	미이행
254	2019	-	-	-	17,840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255	2019	-	-	-	40,740	미이행
256	2019	-	-	-	44,264	미이행
257	2019	-	-	-	45,740	미이행
258	2019	-	-	-	8,000	미이행
259	2019	-	-	-	34,980	미이행
260	2019	-	-	-	27,978	미이행
261	2019	-	-	-	24,480	미이행
262	2019	-	-	-	18,200	미이행
263	2019	-	-	-	82,934	미이행
264	2019	-	-	-	81,919	미이행
265	2019	-	-	-	49,740	미이행
266	2019	-	-	-	99,730	미이행
267	2019	-	-	-	85,464	미이행
268	2019	-	-	-	49,517	미이행
269	2019	-	-	-	188,640	미이행
270	2019	-	-	-	38,264	미이행
271	2019	-	-	-	146,374	미이행
272	2019	-	-	-	4,000	미이행
273	2019	-	-	-	19,900	미이행
274	2019	-	-	-	11,264	미이행
275	2019	-	-	-	120,195	미이행
276	2019	-	-	-	79,900	미이행
277	2019	-	-	-	79,900	미이행
278	2019	-	-	-	61,630	미이행
279	2019	-	-	-	211,794	미이행
280	2019	-	-	-	251,558	미이행
281	2019	-	-	-	20,000	미이행
282	2019	-	-	-	27,000	미이행
283	2019	-	-	-	27,000	미이행
284	2019	-	-	-	27,000	미이행
285	2019	-	-	-	27,000	미이행
286	2019	-	-	-	27,000	미이행
287	2019	-	-	-	18,480	미이행
288	2019	-	-	-	14,520	미이행
289	2019	-	-	-	14,520	미이행
290	2019	-	-	-	43,890	미이행
291	2019	-	-	-	14,520	미이행
292	2019	-	-	-	14,520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293	2019	-	-	-	24,264	미이행
294	2019	-	-	-	20,264	미이행
295	2019	-	-	-	20,264	미이행
296	2019	-	-	-	20,264	미이행
297	2019	-	-	-	20,264	미이행
298	2019	-	-	-	20,264	미이행
299	2019	-	-	-	14,400	미이행
300	2019	-	-	-	36,000	미이행
301	2019	-	-	-	56,400	미이행
302	2019	-	-	-	22,800	미이행
303	2019	-	-	-	24,000	미이행
304	2019	-	-	-	46,800	미이행
305	2019	-	-	-	12,000	미이행
306	2019	-	-	-	28,800	미이행
307	2019	-	-	-	35,640	미이행
308	2019	-	-	-	8,400	미이행
309	2019	-	-	-	13,200	미이행
310	2019	-	-	-	21,600	미이행
311	2019	-	-	-	3,600	미이행
312	2019	-	-	-	3,600	미이행
313	2019	-	-	-	7,200	미이행
314	2019	-	-	-	23,600	미이행
315	2019	-	-	-	46,900	미이행
316	2019	-	-	-	11,000	미이행
317	2019	-	-	-	55,080	미이행
318	2019	-	-	-	61,000	미이행
319	2019	-	-	-	23,000	미이행
320	2019	-	-	-	18,700	미이행
321	2019	-	-	-	23,152	미이행
322	2019	-	-	-	18,000	미이행
323	2019	-	-	-	6,000	미이행
324	2019	-	-	-	19,500	미이행
325	2019	-	-	-	14,520	미이행
326	2019	-	-	-	14,520	미이행
327	2019	-	-	-	14,520	미이행
328	2019	-	-	-	14,520	미이행
329	2019	-	-	-	28,720	미이행
330	2019	-	-	-	11,627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331	2019	-	-	-	14,520	미이행
332	2019	-	-	-	5,500	미이행
333	2019	-	-	-	7,460	미이행
334	2019	-	-	-	8,800	미이행
335	2019	-	-	-	7,460	미이행
336	2019	-	-	-	6,600	미이행
337	2019	-	-	-	10,010	미이행
338	2019	-	-	-	6,910	미이행
339	2019	-	-	-	6,900	미이행
340	2019	-	-	-	42,130	미이행
341	2019	-	-	-	3,000	미이행
342	2019	-	-	-	3,000	미이행
343	2019	-	-	-	2,660	미이행
344	2019	-	-	-	3,000	미이행
345	2019	-	-	-	3,630	미이행
346	2019	-	-	-	3,630	미이행
347	2019	-	-	-	6,000	미이행
348	2019	-	-	-	11,000	미이행
349	2019	-	-	-	6,200	미이행
350	2019	-	-	-	9,570	미이행
351	2019	-	-	-	11,000	미이행
352	2019	-	-	-	8,140	미이행
353	2019	-	-	-	9,900	미이행
354	2019	-	-	-	11,100	미이행
355	2019	-	-	-	6,050	미이행
356	2019	-	-	-	5,830	미이행
357	2019	-	-	-	6,710	미이행
358	2019	-	-	-	10,600	미이행
359	2019	-	-	-	7,150	미이행
360	2019	-	-	-	11,770	미이행
361	2019	-	-	-	6,600	미이행
362	2019	-	-	-	9,460	미이행
363	2019	-	-	-	11,000	미이행
364	2019	-	-	-	12,000	미이행
365	2019	-	-	-	7,000	미이행
366	2019	-	-	-	5,020	미이행
367	2019	-	-	-	5,500	미이행
368	2019	-	-	-	5,500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369	2019	-	-	-	6,600	미이행
370	2019	-	-	-	5,361	미이행
371	2019	-	-	-	6,020	미이행
372	2019	-	-	-	8,580	미이행
373	2019	-	-	-	8,580	미이행
374	2019	-	-	-	10,500	미이행
375	2019	-	-	-	8,280	미이행
376	2019	-	-	-	10,000	미이행
377	2019	-	-	-	6,600	미이행
378	2019	-	-	-	9,460	미이행
379	2019	-	-	-	4,906	미이행
380	2019	-	-	-	4,378	미이행
381	2019	-	-	-	2,451	미이행
382	2019	-	-	-	3,598	미이행
383	2019	-	-	-	10,000	미이행
384	2019	-	-	-	9,999	미이행
385	2019	-	-	-	3,228	미이행
386	2019	-	-	-	6,600	미이행
387	2019	-	-	-	10,450	미이행
388	2019	-	-	-	8,360	미이행
389	2019	-	-	-	10,450	미이행
390	2019	-	-	-	10,120	미이행
391	2019	-	-	-	8,440	미이행
392	2019	-	-	-	4,317	미이행
393	2019	-	-	-	8,250	미이행
394	2019	-	-	-	7,900	미이행
395	2019	-	-	-	6,050	미이행
396	2019	-	-	-	7,100	미이행
397	2019	-	-	-	10,650	미이행
398	2020	-	-	-	42,000	미이행
399	2020	-	-	-	23,479	미이행
400	2020	-	-	-	30,689	미이행
401	2020	-	-	-	24,000	미이행
402	2020	-	-	-	37,178	미이행
403	2020	-	-	-	99,000	미이행
404	2020	-	-	-	15,000	미이행
405	2020	-	-	-	81,180	미이행
406	2020	-	-	-	26,413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407	2020	-	-	-	48,000	미이행
408	2020	-	-	-	12,264	미이행
409	2020	-	-	-	24,000	미이행
410	2020	-	-	-	128,570	미이행
411	2020	-	-	-	33,674	미이행
412	2020	-	-	-	16,210	미이행
413	2020	-	-	-	41,580	미이행
414	2020	-	-	-	43,778	미이행
415	2020	-	-	-	12,264	미이행
416	2020	-	-	-	20,597	미이행
417	2020	-	-	-	23,000	미이행
418	2020	-	-	-	27,324	미이행
419	2020	-	-	-	14,281	미이행
420	2020	-	-	-	15,310	미이행
421	2020	-	-	-	18,425	미이행
422	2020	-	-	-	35,889	미이행
423	2020	-	-	-	23,780	미이행
424	2020	-	-	-	36,264	미이행
425	2020	-	-	-	12,264	미이행
426	2020	-	-	-	30,689	미이행
427	2020	-	-	-	45,103	미이행
428	2020	-	-	-	133,674	미이행
429	2020	-	-	-	129,044	미이행
430	2020	-	-	-	6,300	미이행
431	2020	-	-	-	49,780	미이행
432	2020	-	-	-	223,320	미이행
433	2020	-	-	-	223,320	미이행
434	2020	-	-	-	195,600	미이행
435	2020	-	-	-	186,145	미이행
436	2020	-	-	-	186,145	미이행
437	2020	-	-	-	186,145	미이행
438	2020	-	-	-	124,680	미이행
439	2020	-	-	-	110,740	미이행
440	2020	-	-	-	108,586	미이행
441	2020	-	-	-	42,592	미이행
442	2020	-	-	-	35,112	미이행
443	2020	-	-	-	48,000	미이행
444	2020	-	-	-	35,500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445	2020	-	-	-	49,000	미이행
446	2020	-	-	-	49,500	미이행
447	2020	-	-	-	3,600	미이행
448	2020	-	-	-	43,029	미이행
449	2020	-	-	-	48,480	미이행
450	2020	-	-	-	15,000	미이행
451	2020	-	-	-	3,600	미이행
452	2020	-	-	-	6,000	미이행
453	2020	-	-	-	24,000	미이행
454	2020	-	-	-	59,620	미이행
455	2020	-	-	-	9,610	미이행
456	2020	-	-	-	16,525	미이행
457	2020	-	-	-	16,500	미이행
458	2020	-	-	-	27,600	미이행
459	2020	-	-	-	6,200	미이행
460	2020	-	-	-	20,080	미이행
461	2020	-	-	-	24,000	미이행
462	2020	-	-	-	4,800	미이행
463	2020	-	-	-	8,100	미이행
464	2020	-	-	-	30,000	미이행
465	2020	-	-	-	11,300	미이행
466	2020	-	-	-	46,800	미이행
467	2020	-	-	-	9,600	미이행
468	2020	-	-	-	7,200	미이행
469	2020	-	-	-	12,820	미이행
470	2020	-	-	-	12,000	미이행
471	2020	-	-	-	14,960	미이행
472	2020	-	-	-	16,500	미이행
473	2020	-	-	-	55,000	미이행
474	2020	-	-	-	15,294	미이행
475	2020	-	-	-	15,294	미이행
476	2020	-	-	-	15,294	미이행
477	2020	-	-	-	15,294	미이행
478	2020	-	-	-	15,294	미이행
479	2020	-	-	-	15,294	미이행
480	2020	-	-	-	15,294	미이행
481	2020	-	-	-	15,294	미이행
482	2020	-	-	-	15,294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483	2020	-	-	-	30,588	미이행
484	2020	-	-	-	15,294	미이행
485	2020	-	-	-	15,294	미이행
486	2020	-	-	-	15,294	미이행
487	2020	-	-	-	15,294	미이행
488	2020	-	-	-	15,294	미이행
489	2020	-	-	-	15,294	미이행
490	2020	-	-	-	10,000	미이행
491	2020	-	-	-	6,600	미이행
492	2020	-	-	-	6,600	미이행
493	2020	-	-	-	6,600	미이행
494	2020	-	-	-	6,600	미이행
495	2020	-	-	-	6,600	미이행
496	2020	-	-	-	6,600	미이행
497	2020	-	-	-	6,600	미이행
498	2020	-	-	-	7,260	미이행
499	2020	-	-	-	14,520	미이행
500	2020	-	-	-	7,260	미이행
501	2020	-	-	-	7,260	미이행
502	2020	-	-	-	7,260	미이행
503	2020	-	-	-	7,260	미이행
504	2020	-	-	-	6,600	미이행
505	2020	-	-	-	6,600	미이행
506	2020	-	-	-	6,600	미이행
507	2020	-	-	-	6,600	미이행
508	2020	-	-	-	11,000	미이행
509	2020	-	-	-	12,540	미이행
510	2020	-	-	-	32,528	미이행
511	2020	-	-	-	32,528	미이행
512	2020	-	-	-	32,528	미이행
513	2020	-	-	-	32,528	미이행
514	2020	-	-	-	32,528	미이행
515	2020	-	-	-	32,528	미이행
516	2020	-	-	-	32,528	미이행
517	2020	-	-	-	23,094	미이행
518	2020	-	-	-	56,000	미이행
519	2020	-	-	-	56,000	미이행
520	2020	-	-	-	14,520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521	2020	-	-	-	4,600	미이행
522	2020	-	-	-	6,600	미이행
523	2020	-	-	-	6,600	미이행
524	2020	-	-	-	6,600	미이행
525	2020	-	-	-	6,600	미이행
526	2020	-	-	-	11,000	미이행
527	2020	-	-	-	11,000	미이행
528	2020	-	-	-	6,600	미이행
529	2020	-	-	-	6,600	미이행
530	2020	-	-	-	1,600	미이행
531	2020	-	-	-	6,600	미이행
532	2020	-	-	-	11,000	미이행
533	2020	-	-	-	6,600	미이행
534	2020	-	-	-	3,000	미이행
535	2020	-	-	-	9,381	미이행
536	2020	-	-	-	6,600	미이행
537	2020	-	-	-	8,800	미이행
538	2020	-	-	-	24,323	미이행
539	2020	-	-	-	7,500	미이행
540	2020	-	-	-	10,000	미이행
541	2020	-	-	-	9,800	미이행
542	2020	-	-	-	4,500	미이행
543	2020	-	-	-	1,800	미이행
544	2020	-	-	-	6,600	미이행
545	2020	-	-	-	9,179	미이행
546	2020	-	-	-	11,600	미이행
547	2020	-	-	-	10,818	미이행
548	2020	-	-	-	6,600	미이행
549	2020	-	-	-	11,000	미이행
550	2020	-	-	-	3,524	미이행
551	2020	-	-	-	6,000	미이행
552	2020	-	-	-	6,600	미이행
553	2020	-	-	-	7,535	미이행
554	2020	-	-	-	8,800	미이행
555	2020	-	-	-	4,200	미이행
556	2020	-	-	-	13,200	미이행
557	2020	-	-	-	6,600	미이행
558	2020	-	-	-	6,730	미이행

번호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559	2020	-	-	-	20,000	미이행
560	2020	-	-	-	16,105	미이행
561	2020	-	-	-	15,000	미이행
562	2020	-	-	-	15,000	미이행
563	2020	-	-	-	14,850	미이행
564	2020	-	-	-	12,500	미이행
565	2020	-	-	-	12,500	미이행
566	2020	-	-	-	8,035	미이행
567	2020	-	-	-	8,035	미이행
568	2020	-	-	-	15,000	미이행

자료: ○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재구성.

[별표 2]

2017~2020년 ㄷ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장비 내역

(단위: 천원)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총계		총 770건, 196억 9,599만 원			
1	-	-	-	2,640	-미이행 -무허가축사로 고발 및 폐업(2021.05.04.)
2	-	-	-	2,100	-미이행 -무허가축사로 고발 및 폐업(2021.05.04.)
3	-	-	-	5,000	-미이행 -무허가축사로 고발 및 폐업(2021.05.04.)
4	-	-	-	5,000	-미이행 -폐업(2021.11.17.)
5	-	-	-	2,640	-미이행 -폐업(2021.11.17.)
6	-	-	-	4,500	-미이행 -폐업(2021.06.24.)
7	-	-	-	5,000	-미이행 -폐업(2021.03.10.)
8	-	-	-	10,000	-미이행 -폐업(2020.12.01.)
9	-	-	-	4,300	-미이행 -폐업(2020.08.07.)
10	-	-	-	15,000	-미이행 -폐업(2020.05.21.)
11	-	-	-	4,500	-미이행 -폐업(2020.05.20.)
12	-	-	-	10,000	-미이행 -폐업(2019.12.23.)
13	-	-	-	4,500	-미이행 -폐업(2019.12.04)
14	-	-	-	4,500	-미이행 -폐업(2019.11.13.)
15	-	-	-	47,300	-미이행 -폐업(2019.11.13.)
16	-	-	-	47,300	-미이행 -폐업(2019.11.13.)
17	-	-	-	4,500	-미이행 -폐업(2019.09.17.)
18	-	-	-	4,500	-미이행 -폐업(2019.09.17.)
19	-	-	-	4,500	-미이행 -폐업(2019.09.02.)
20	-	-	-	4,500	-미이행 -폐업(2019.06.10.)
21	-	-	-	4,500	-미이행 -폐업(2018.11.28.)
22	-	-	-	15,000	-미이행 -폐업(2021.06.24.)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23	-	-	-	10,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24	-	-	-	2,64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25	-	-	-	1,65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26	-	-	-	2,64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27	-	-	-	2,1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28	-	-	-	5,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29	-	-	-	2,64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30	-	-	-	1,68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31	-	-	-	66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32	-	-	-	2,1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33	-	-	-	20,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34	-	-	-	1,68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35	-	-	-	35,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36	-	-	-	17,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37	-	-	-	9,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38	-	-	-	15,35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39	-	-	-	170,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40	-	-	-	4,2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41	-	-	-	7,2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42	-	-	-	7,2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43	-	-	-	20,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44	-	-	-	3,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45	-	-	-	8,346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46	-	-	-	46,2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47	-	-	-	16,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48	-	-	-	24,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49	-	-	-	8,8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50	-	-	-	4,62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51	-	-	-	150,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52	-	-	-	10,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53	-	-	-	35,2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54	-	-	-	4,4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55	-	-	-	24,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56	-	-	-	1,4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57	-	-	-	7,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58	-	-	-	18,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59	-	-	-	99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60	-	-	-	47,3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61	-	-	-	3,85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62	-	-	-	10,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63	-	-	-	12,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64	-	-	-	1,32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65	-	-	-	51,7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66	-	-	-	13,9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67	-	-	-	3,2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68	-	-	-	5,039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69	-	-	-	5,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70	-	-	-	3,96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71	-	-	-	2,06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72	-	-	-	1,4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73	-	-	-	5,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74	-	-	-	23,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75	-	-	-	2,04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76	-	-	-	8,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77	-	-	-	20,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78	-	-	-	1,68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79	-	-	-	45,1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80	-	-	-	10,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81	-	-	-	20,57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82	-	-	-	11,228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83	-	-	-	77,019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84	-	-	-	41,8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85	-	-	-	25,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86	-	-	-	3,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87	-	-	-	10,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88	-	-	-	63,000	-미이행 -보조사업장소 변경필요
89	-	-	-	10,000	-미이행 -무허가 폐쇄 대상 축사 (지속적 확인필요)
90	-	-	-	4,410	미이행
91	-	-	-	51,700	미이행
92	-	-	-	44,000	미이행
93	-	-	-	50,000	미이행
94	-	-	-	10,000	미이행
95	-	-	-	10,000	미이행
96	-	-	-	20,000	미이행
97	-	-	-	20,000	미이행
98	-	-	-	16,560	미이행
99	-	-	-	12,400	미이행
100	-	-	-	4,000	미이행
101	-	-	-	3,620	미이행
102	-	-	-	5,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103	-	-	-	10,000	미이행
104	-	-	-	1,400	미이행
105	-	-	-	5,000	미이행
106	-	-	-	2,500	미이행
107	-	-	-	1,120	미이행
108	-	-	-	5,000	미이행
109	-	-	-	1,120	미이행
110	-	-	-	5,000	미이행
111	-	-	-	3,600	미이행
112	-	-	-	51,700	미이행
113	-	-	-	31,769	미이행
114	-	-	-	4,500	미이행
115	-	-	-	16,980	미이행
116	-	-	-	9,000	미이행
117	-	-	-	20,000	미이행
118	-	-	-	2,040	미이행
119	-	-	-	95,800	미이행
120	-	-	-	20,000	미이행
121	-	-	-	40,200	미이행
122	-	-	-	3,300	미이행
123	-	-	-	8,900	미이행
124	-	-	-	2,640	미이행
125	-	-	-	5,000	미이행
126	-	-	-	2,640	미이행
127	-	-	-	2,000	미이행
128	-	-	-	4,000	미이행
129	-	-	-	5,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130	-	-	-	2,800	미이행
131	-	-	-	10,032	미이행
132	-	-	-	4,000	미이행
133	-	-	-	13,200	미이행
134	-	-	-	5,000	미이행
135	-	-	-	55,000	미이행
136	-	-	-	51,700	미이행
137	-	-	-	11,000	미이행
138	-	-	-	5,000	미이행
139	-	-	-	50,000	미이행
140	-	-	-	20,000	미이행
141	-	-	-	86,000	미이행
142	-	-	-	660	미이행
143	-	-	-	3,000	미이행
144	-	-	-	2,100	미이행
145	-	-	-	514,871	미이행
146	-	-	-	4,620	미이행
147	-	-	-	22,000	미이행
148	-	-	-	2,100	미이행
149	-	-	-	4,620	미이행
150	-	-	-	1,980	미이행
151	-	-	-	700	미이행
152	-	-	-	11,000	미이행
153	-	-	-	30,800	미이행
154	-	-	-	41,250	미이행
155	-	-	-	200,000	미이행
156	-	-	-	101,3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157	-	-	-	3,630	미이행
158	-	-	-	660	미이행
159	-	-	-	41,250	미이행
160	-	-	-	13,700	미이행
161	-	-	-	16,800	미이행
162	-	-	-	33,000	미이행
163	-	-	-	20,000	미이행
164	-	-	-	10,000	미이행
165	-	-	-	5,000	미이행
166	-	-	-	4,000	미이행
167	-	-	-	13,200	미이행
168	-	-	-	22,000	미이행
169	-	-	-	5,000	미이행
170	-	-	-	36,000	미이행
171	-	-	-	4,200	미이행
172	-	-	-	4,500	미이행
173	-	-	-	4,500	미이행
174	-	-	-	5,000	미이행
175	-	-	-	14,000	미이행
176	-	-	-	4,000	미이행
177	-	-	-	5,000	미이행
178	-	-	-	2,200	미이행
179	-	-	-	20,000	미이행
180	-	-	-	48,400	미이행
181	-	-	-	24,200	미이행
182	-	-	-	17,590	미이행
183	-	-	-	12,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184	-	-	-	8,800	미이행
185	-	-	-	17,900	미이행
186	-	-	-	36,300	미이행
187	-	-	-	22,000	미이행
188	-	-	-	22,000	미이행
189	-	-	-	30,107	미이행
190	-	-	-	24,000	미이행
191	-	-	-	25,000	미이행
192	-	-	-	4,400	미이행
193	-	-	-	200,000	미이행
194	-	-	-	35,000	미이행
195	-	-	-	3,600	미이행
196	-	-	-	22,000	미이행
197	-	-	-	220,000	미이행
198	-	-	-	45,100	미이행
199	-	-	-	44,000	미이행
200	-	-	-	44,000	미이행
201	-	-	-	12,000	미이행
202	-	-	-	22,000	미이행
203	-	-	-	1,400	미이행
204	-	-	-	2,000	미이행
205	-	-	-	5,000	미이행
206	-	-	-	5,808	미이행
207	-	-	-	5,000	미이행
208	-	-	-	9,075	미이행
209	-	-	-	11,000	미이행
210	-	-	-	1,89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211	-	-	-	2,310	미이행
212	-	-	-	10,560	미이행
213	-	-	-	5,000	미이행
214	-	-	-	20,000	미이행
215	-	-	-	2,720	미이행
216	-	-	-	170,000	미이행
217	-	-	-	88,000	미이행
218	-	-	-	820,027	미이행
219	-	-	-	11,700	미이행
220	-	-	-	12,100	미이행
221	-	-	-	2,040	미이행
222	-	-	-	5,000	미이행
223	-	-	-	4,200	미이행
224	-	-	-	8,910	미이행
225	-	-	-	21,000	미이행
226	-	-	-	13,900	미이행
227	-	-	-	165,000	미이행
228	-	-	-	2,240	미이행
229	-	-	-	1,500	미이행
230	-	-	-	2,970	미이행
231	-	-	-	60,000	미이행
232	-	-	-	20,000	미이행
233	-	-	-	20,000	미이행
234	-	-	-	4,200	미이행
235	-	-	-	3,520	미이행
236	-	-	-	3,000	미이행
237	-	-	-	1,5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238	-	-	-	30,250	미이행
239	-	-	-	30,030	미이행
240	-	-	-	13,000	미이행
241	-	-	-	30,000	미이행
242	-	-	-	121,060	미이행
243	-	-	-	52,000	미이행
244	-	-	-	22,000	미이행
245	-	-	-	18,000	미이행
246	-	-	-	6,270	미이행
247	-	-	-	11,000	미이행
248	-	-	-	10,000	미이행
249	-	-	-	38,500	미이행
250	-	-	-	3,600	미이행
251	-	-	-	5,000	미이행
252	-	-	-	4,200	미이행
253	-	-	-	14,000	미이행
254	-	-	-	3,971	미이행
255	-	-	-	20,000	미이행
256	-	-	-	50,000	미이행
257	-	-	-	6,600	미이행
258	-	-	-	48,400	미이행
259	-	-	-	20,000	미이행
260	-	-	-	41,000	미이행
261	-	-	-	4,620	미이행
262	-	-	-	30,000	미이행
263	-	-	-	20,000	미이행
264	-	-	-	5,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265	-	-	-	12,000	미이행
266	-	-	-	3,600	미이행
267	-	-	-	3,600	미이행
268	-	-	-	150,000	미이행
269	-	-	-	5,000	미이행
270	-	-	-	39,000	미이행
271	-	-	-	5,000	미이행
272	-	-	-	160,000	미이행
273	-	-	-	56,342	미이행
274	-	-	-	5,000	미이행
275	-	-	-	22,000	미이행
276	-	-	-	12,000	미이행
277	-	-	-	20,000	미이행
278	-	-	-	20,000	미이행
279	-	-	-	20,000	미이행
280	-	-	-	2,040	미이행
281	-	-	-	17,000	미이행
282	-	-	-	6,600	미이행
283	-	-	-	13,068	미이행
284	-	-	-	22,000	미이행
285	-	-	-	64,900	미이행
286	-	-	-	930	미이행
287	-	-	-	65,389	미이행
288	-	-	-	47,300	미이행
289	-	-	-	20,000	미이행
290	-	-	-	13,900	미이행
291	-	-	-	44,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292	-	-	-	22,000	미이행
293	-	-	-	21,300	미이행
294	-	-	-	2,700	미이행
295	-	-	-	30,000	미이행
296	-	-	-	1,650	미이행
297	-	-	-	3,960	미이행
298	-	-	-	3,000	미이행
299	-	-	-	51,700	미이행
300	-	-	-	22,000	미이행
301	-	-	-	30,074	미이행
302	-	-	-	20,000	미이행
303	-	-	-	770	미이행
304	-	-	-	20,800	미이행
305	-	-	-	11,000	미이행
306	-	-	-	13,900	미이행
307	-	-	-	5,610	미이행
308	-	-	-	5,000	미이행
309	-	-	-	3,520	미이행
310	-	-	-	2,750	미이행
311	-	-	-	140,250	미이행
312	-	-	-	22,000	미이행
313	-	-	-	16,500	미이행
314	-	-	-	30,800	미이행
315	-	-	-	9,600	미이행
316	-	-	-	4,400	미이행
317	-	-	-	8,030	미이행
318	-	-	-	6,3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319	-	-	-	7,920	미이행
320	-	-	-	20,000	미이행
321	-	-	-	4,400	미이행
322	-	-	-	85,272	미이행
323	-	-	-	20,000	미이행
324	-	-	-	242,000	미이행
325	-	-	-	29,500	미이행
326	-	-	-	1,400	미이행
327	-	-	-	2,640	미이행
328	-	-	-	4,994	미이행
329	-	-	-	4,200	미이행
330	-	-	-	2,400	미이행
331	-	-	-	15,000	미이행
332	-	-	-	5,000	미이행
333	-	-	-	150,000	미이행
334	-	-	-	20,000	미이행
335	-	-	-	35,200	미이행
336	-	-	-	50,000	미이행
337	-	-	-	1,371	미이행
338	-	-	-	34,100	미이행
339	-	-	-	150,000	미이행
340	-	-	-	51,700	미이행
341	-	-	-	10,500	미이행
342	-	-	-	38,500	미이행
343	-	-	-	9,000	미이행
344	-	-	-	33,000	미이행
345	-	-	-	20,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346	-	-	-	20,000	미이행
347	-	-	-	5,000	미이행
348	-	-	-	1,240	미이행
349	-	-	-	1,860	미이행
350	-	-	-	20,000	미이행
351	-	-	-	20,000	미이행
352	-	-	-	4,200	미이행
353	-	-	-	13,000	미이행
354	-	-	-	5,000	미이행
355	-	-	-	12,000	미이행
356	-	-	-	11,000	미이행
357	-	-	-	4,500	미이행
358	-	-	-	20,000	미이행
359	-	-	-	17,000	미이행
360	-	-	-	2,100	미이행
361	-	-	-	6,300	미이행
362	-	-	-	22,000	미이행
363	-	-	-	44,000	미이행
364	-	-	-	20,000	미이행
365	-	-	-	20,000	미이행
366	-	-	-	15,000	미이행
367	-	-	-	4,620	미이행
368	-	-	-	20,000	미이행
369	-	-	-	66,000	미이행
370	-	-	-	116,140	미이행
371	-	-	-	11,000	미이행
372	-	-	-	10,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373	-	-	-	6,600	미이행
374	-	-	-	11,000	미이행
375	-	-	-	13,900	미이행
376	-	-	-	74,800	미이행
377	-	-	-	25,000	미이행
378	-	-	-	9,000	미이행
379	-	-	-	26,000	미이행
380	-	-	-	20,000	미이행
381	-	-	-	17,000	미이행
382	-	-	-	12,000	미이행
383	-	-	-	5,039	미이행
384	-	-	-	1,750	미이행
385	-	-	-	80,300	미이행
386	-	-	-	700	미이행
387	-	-	-	9,000	미이행
388	-	-	-	30,000	미이행
389	-	-	-	23,000	미이행
390	-	-	-	17,000	미이행
391	-	-	-	20,000	미이행
392	-	-	-	1,400	미이행
393	-	-	-	20,000	미이행
394	-	-	-	20,000	미이행
395	-	-	-	4,980	미이행
396	-	-	-	5,500	미이행
397	-	-	-	52,000	미이행
398	-	-	-	23,000	미이행
399	-	-	-	20,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400	-	-	-	20,000	미이행
401	-	-	-	36,850	미이행
402	-	-	-	43,000	미이행
403	-	-	-	220,000	미이행
404	-	-	-	373,835	미이행
405	-	-	-	15,000	미이행
406	-	-	-	4,620	미이행
407	-	-	-	2,720	미이행
408	-	-	-	13,000	미이행
409	-	-	-	51,700	미이행
410	-	-	-	4,960	미이행
411	-	-	-	20,000	미이행
412	-	-	-	20,000	미이행
413	-	-	-	2,170	미이행
414	-	-	-	3,900	미이행
415	-	-	-	11,000	미이행
416	-	-	-	2,240	미이행
417	-	-	-	1,650	미이행
418	-	-	-	36,300	미이행
419	-	-	-	44,000	미이행
420	-	-	-	1,980	미이행
421	-	-	-	7,128	미이행
422	-	-	-	17,000	미이행
423	-	-	-	3,000	미이행
424	-	-	-	20,000	미이행
425	-	-	-	23,000	미이행
426	-	-	-	3,9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427	-	-	-	20,000	미이행
428	-	-	-	20,000	미이행
429	-	-	-	20,000	미이행
430	-	-	-	30,000	미이행
431	-	-	-	48,000	미이행
432	-	-	-	1,650	미이행
433	-	-	-	1,980	미이행
434	-	-	-	40,250	미이행
435	-	-	-	40,000	미이행
436	-	-	-	75,000	미이행
437	-	-	-	3,120	미이행
438	-	-	-	52,800	미이행
439	-	-	-	26,500	미이행
440	-	-	-	10,000	미이행
441	-	-	-	4,200	미이행
442	-	-	-	18,700	미이행
443	-	-	-	51,700	미이행
444	-	-	-	22,000	미이행
445	-	-	-	47,300	미이행
446	-	-	-	5,000	미이행
447	-	-	-	2,100	미이행
448	-	-	-	660	미이행
449	-	-	-	1,050	미이행
450	-	-	-	30,000	미이행
451	-	-	-	11,000	미이행
452	-	-	-	3,960	미이행
453	-	-	-	33,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454	-	-	-	50,000	미이행
455	-	-	-	4,411	미이행
456	-	-	-	30,228	미이행
457	-	-	-	20,000	미이행
458	-	-	-	4,620	미이행
459	-	-	-	22,000	미이행
460	-	-	-	30,000	미이행
461	-	-	-	200,919	미이행
462	-	-	-	40,000	미이행
463	-	-	-	33,000	미이행
464	-	-	-	43,580	미이행
465	-	-	-	46,750	미이행
466	-	-	-	16,000	미이행
467	-	-	-	37,000	미이행
468	-	-	-	20,000	미이행
469	-	-	-	3,839	미이행
470	-	-	-	40,800	미이행
471	-	-	-	21,000	미이행
472	-	-	-	23,000	미이행
473	-	-	-	10,000	미이행
474	-	-	-	60,000	미이행
475	-	-	-	51,150	미이행
476	-	-	-	2,302	미이행
477	-	-	-	6,600	미이행
478	-	-	-	98,000	미이행
479	-	-	-	30,000	미이행
480	-	-	-	37,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481	-	-	-	234,030	미이행
482	-	-	-	22,000	미이행
483	-	-	-	700	미이행
484	-	-	-	37,000	미이행
485	-	-	-	2,310	미이행
486	-	-	-	2,660	미이행
487	-	-	-	51,700	미이행
488	-	-	-	16,000	미이행
489	-	-	-	20,000	미이행
490	-	-	-	10,000	미이행
491	-	-	-	15,000	미이행
492	-	-	-	30,000	미이행
493	-	-	-	15,000	미이행
494	-	-	-	41,360	미이행
495	-	-	-	10,000	미이행
496	-	-	-	990	미이행
497	-	-	-	20,000	미이행
498	-	-	-	17,000	미이행
499	-	-	-	3,000	미이행
500	-	-	-	42,900	미이행
501	-	-	-	9,000	미이행
502	-	-	-	33,000	미이행
503	-	-	-	33,600	미이행
504	-	-	-	1,610	미이행
505	-	-	-	160,000	미이행
506	-	-	-	44,000	미이행
507	-	-	-	52,8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508	-	-	-	33,000	미이행
509	-	-	-	30,000	미이행
510	-	-	-	51,700	미이행
511	-	-	-	660	미이행
512	-	-	-	1,650	미이행
513	-	-	-	1,750	미이행
514	-	-	-	46,200	미이행
515	-	-	-	4,000	미이행
516	-	-	-	6,000	미이행
517	-	-	-	3,080	미이행
518	-	-	-	150,000	미이행
519	-	-	-	58,000	미이행
520	-	-	-	4,620	미이행
521	-	-	-	5,000	미이행
522	-	-	-	40,700	미이행
523	-	-	-	840	미이행
524	-	-	-	112,000	미이행
525	-	-	-	8,800	미이행
526	-	-	-	11,000	미이행
527	-	-	-	44,000	미이행
528	-	-	-	42,900	미이행
529	-	-	-	11,000	미이행
530	-	-	-	6,930	미이행
531	-	-	-	37,400	미이행
532	-	-	-	5,000	미이행
533	-	-	-	5,000	미이행
534	-	-	-	12,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535	-	-	-	5,000	미이행
536	-	-	-	2,750	미이행
537	-	-	-	1,400	미이행
538	-	-	-	3,493	미이행
539	-	-	-	15,000	미이행
540	-	-	-	18,260	미이행
541	-	-	-	30,000	미이행
542	-	-	-	5,000	미이행
543	-	-	-	2,040	미이행
544	-	-	-	20,000	미이행
545	-	-	-	12,000	미이행
546	-	-	-	332,930	미이행
547	-	-	-	2,040	미이행
548	-	-	-	22,000	미이행
549	-	-	-	37,400	미이행
550	-	-	-	37,400	미이행
551	-	-	-	2,640	미이행
552	-	-	-	22,000	미이행
553	-	-	-	11,000	미이행
554	-	-	-	16,000	미이행
555	-	-	-	31,900	미이행
556	-	-	-	1,980	미이행
557	-	-	-	1,980	미이행
558	-	-	-	15,500	미이행
559	-	-	-	4,290	미이행
560	-	-	-	58,000	미이행
561	-	-	-	1,157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562	-	-	-	1,320	미이행
563	-	-	-	1,000	미이행
564	-	-	-	10,000	미이행
565	-	-	-	7,200	미이행
566	-	-	-	4,200	미이행
567	-	-	-	12,200	미이행
568	-	-	-	10,000	미이행
569	-	-	-	30,800	미이행
570	-	-	-	11,000	미이행
571	-	-	-	14,000	미이행
572	-	-	-	20,000	미이행
573	-	-	-	4,500	미이행
574	-	-	-	17,700	미이행
575	-	-	-	20,000	미이행
576	-	-	-	6,655	미이행
577	-	-	-	3,000	미이행
578	-	-	-	22,000	미이행
579	-	-	-	5,700	미이행
580	-	-	-	47,300	미이행
581	-	-	-	5,000	미이행
582	-	-	-	3,971	미이행
583	-	-	-	660	미이행
584	-	-	-	1,500	미이행
585	-	-	-	4,000	미이행
586	-	-	-	42,000	미이행
587	-	-	-	15,000	미이행
588	-	-	-	1,2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589	-	-	-	1,050	미이행
590	-	-	-	12,000	미이행
591	-	-	-	10,000	미이행
592	-	-	-	10,000	미이행
593	-	-	-	50,000	미이행
594	-	-	-	30,000	미이행
595	-	-	-	15,000	미이행
596	-	-	-	51,700	미이행
597	-	-	-	37,950	미이행
598	-	-	-	12,000	미이행
599	-	-	-	30,000	미이행
600	-	-	-	11,000	미이행
601	-	-	-	3,300	미이행
602	-	-	-	2,170	미이행
603	-	-	-	4,200	미이행
604	-	-	-	7,920	미이행
605	-	-	-	4,928	미이행
606	-	-	-	20,000	미이행
607	-	-	-	18,260	미이행
608	-	-	-	51,700	미이행
609	-	-	-	4,500	미이행
610	-	-	-	16,000	미이행
611	-	-	-	4,500	미이행
612	-	-	-	20,000	미이행
613	-	-	-	600	미이행
614	-	-	-	5,000	미이행
615	-	-	-	2,1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616	-	-	-	29,140	미이행
617	-	-	-	5,610	미이행
618	-	-	-	990	미이행
619	-	-	-	300	미이행
620	-	-	-	26,000	미이행
621	-	-	-	5,000	미이행
622	-	-	-	10,000	미이행
623	-	-	-	2,288	미이행
624	-	-	-	3,300	미이행
625	-	-	-	12,000	미이행
626	-	-	-	4,200	미이행
627	-	-	-	24,995	미이행
628	-	-	-	3,000	미이행
629	-	-	-	6,336	미이행
630	-	-	-	10,000	미이행
631	-	-	-	600	미이행
632	-	-	-	10,000	미이행
633	-	-	-	5,000	미이행
634	-	-	-	700	미이행
635	-	-	-	11,000	미이행
636	-	-	-	51,700	미이행
637	-	-	-	150,000	미이행
638	-	-	-	4,400	미이행
639	-	-	-	20,000	미이행
640	-	-	-	30,658	미이행
641	-	-	-	30,000	미이행
642	-	-	-	20,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643	-	-	-	54,000	미이행
644	-	-	-	30,370	미이행
645	-	-	-	40,000	미이행
646	-	-	-	10,450	미이행
647	-	-	-	190,000	미이행
648	-	-	-	58,300	미이행
649	-	-	-	4,500	미이행
650	-	-	-	30,000	미이행
651	-	-	-	13,900	미이행
652	-	-	-	5,000	미이행
653	-	-	-	1,650	미이행
654	-	-	-	13,900	미이행
655	-	-	-	39,600	미이행
656	-	-	-	20,000	미이행
657	-	-	-	13,000	미이행
658	-	-	-	20,000	미이행
659	-	-	-	234,222	미이행
660	-	-	-	26,400	미이행
661	-	-	-	33,000	미이행
662	-	-	-	3,000	미이행
663	-	-	-	58,300	미이행
664	-	-	-	55,247	미이행
665	-	-	-	10,000	미이행
666	-	-	-	55,246	미이행
667	-	-	-	350	미이행
668	-	-	-	11,000	미이행
669	-	-	-	30,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670	-	-	-	50,000	미이행
671	-	-	-	58,300	미이행
672	-	-	-	20,000	미이행
673	-	-	-	9,000	미이행
674	-	-	-	20,000	미이행
675	-	-	-	27,000	미이행
676	-	-	-	161,700	미이행
677	-	-	-	2,970	미이행
678	-	-	-	2,310	미이행
679	-	-	-	46,200	미이행
680	-	-	-	3,300	미이행
681	-	-	-	2,100	미이행
682	-	-	-	46,200	미이행
683	-	-	-	2,100	미이행
684	-	-	-	3,500	미이행
685	-	-	-	200,000	미이행
686	-	-	-	10,000	미이행
687	-	-	-	170,000	미이행
688	-	-	-	22,000	미이행
689	-	-	-	7,000	미이행
690	-	-	-	10,000	미이행
691	-	-	-	30,000	미이행
692	-	-	-	20,000	미이행
693	-	-	-	17,000	미이행
694	-	-	-	47,500	미이행
695	-	-	-	420	미이행
696	-	-	-	4,5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697	-	-	-	10,000	미이행
698	-	-	-	606	미이행
699	-	-	-	748	미이행
700	-	-	-	792	미이행
701	-	-	-	3,607	미이행
702	-	-	-	25,168	미이행
703	-	-	-	5,000	미이행
704	-	-	-	4,500	미이행
705	-	-	-	15,500	미이행
706	-	-	-	20,000	미이행
707	-	-	-	38,500	미이행
708	-	-	-	41,200	미이행
709	-	-	-	11,000	미이행
710	-	-	-	350	미이행
711	-	-	-	36,300	미이행
712	-	-	-	17,000	미이행
713	-	-	-	10,000	미이행
714	-	-	-	3,530	미이행
715	-	-	-	4,000	미이행
716	-	-	-	30,000	미이행
717	-	-	-	5,000	미이행
718	-	-	-	4,000	미이행
719	-	-	-	9,600	미이행
720	-	-	-	5,000	미이행
721	-	-	-	20,000	미이행
722	-	-	-	20,000	미이행
723	-	-	-	11,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724	-	-	-	4,620	미이행
725	-	-	-	6,435	미이행
726	-	-	-	15,000	미이행
727	-	-	-	630	미이행
728	-	-	-	700	미이행
729	-	-	-	4,620	미이행
730	-	-	-	3,146	미이행
731	-	-	-	5,000	미이행
732	-	-	-	12,000	미이행
733	-	-	-	10,000	미이행
734	-	-	-	1,230	미이행
735	-	-	-	10,000	미이행
736	-	-	-	22,000	미이행
737	-	-	-	8,400	미이행
738	-	-	-	2,640	미이행
739	-	-	-	18,260	미이행
740	-	-	-	1,056	미이행
741	-	-	-	4,994	미이행
742	-	-	-	3,960	미이행
743	-	-	-	1,400	미이행
744	-	-	-	22,000	미이행
745	-	-	-	50,050	미이행
746	-	-	-	8,990	미이행
747	-	-	-	23,000	미이행
748	-	-	-	51,000	미이행
749	-	-	-	10,000	미이행
750	-	-	-	10,000	미이행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중요재산 명	금액 (천원)	점검 및 별도 장부(대장) 작성 관리 여부 등
751	-	-	-	4,620	미이행
752	-	-	-	27,000	미이행
753	-	-	-	25,500	미이행
754	-	-	-	22,000	미이행
755	-	-	-	30,000	미이행
756	-	-	-	20,000	미이행
757	-	-	-	30,000	미이행
758	-	-	-	5,000	미이행
759	-	-	-	4,620	미이행
760	-	-	-	11,000	미이행
761	-	-	-	30,283	미이행
762	-	-	-	20,000	미이행
763	-	-	-	10,000	미이행
764	-	-	-	30,085	미이행
765	-	-	-	4,400	미이행
766	-	-	-	18,800	미이행
767	-	-	-	9,000	미이행
768	-	-	-	1,400	미이행
769	-	-	-	20,500	미이행
770	-	-	-	15,000	미이행

자료: ●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재구성.

[별표 3]

폐업 ㄷ농가 환수금액 산정 내역

(단위: 천원)

번호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장소)	보조사업 내용	총사업비 (천원)	지원보조금 (천원)	사업완료일 (사후관리기간)	폐업일	잔여사후관리기간 (개월)	환수금[1] (천원)
합계		총 22건, 사업비: 1억 7,442만 원, 환수금: 5,383만원						
1	-	-	4,500	3,150	2017.12.26. (5년)	2021.06.24.	19	998
2	-	-	15,000	7,500	2019.08.12. (5년)	2021.06.24.	38	4,750
3	-	-	3,840	1,200	2018.10.11. (5년)	2021.05.04.	30	600
4	-	-	2,040	1,000	2018.10.11. (5년)	2021.05.04.	30	500
5	-	-	5,000	2,000	2019.06.13. (5년)	2021.05.04.	37	1,233
6	-	-	4,500	3,150	2017.11.01. (5년)	2019.12.04.	35	1,838
7	-	-	4,500	3,150	2017.08.31. (5년)	2019.11.13.	34	1,785
8	-	-	47,300	15,000	2018.01.11. (5년)	2019.11.13.	38	9,500
9	-	-	4,500	3,150	2017.10.10. (5년)	2019.09.02.	37	1,942
10	-	-	5,000	2,000	2019.04.29. (5년)	2021.03.10.	37	1,233
11	-	-	4,300	3,010	2017.12.26. (5년)	2020.08.07.	29	1,455
12	-	-	8,800	4,400	2019.06.14. (5년)	2020.02.27.	52	3,813
13	-	-	4,500	3,150	2017.08.31. (5년)	2018.11.28.	46	2,415
14	-	-	4,500	3,150	2017.11.01. (5년)	2019.06.10.)	41	2,153
15	-	-	10,000	5,000	2018.10.08. (5년)	2019.12.23.	46	3,833
16	-	-	4,500	3,150	2017.12.26. (5년)	2019.09.17.	40	2,100
17	-	-	4,500	3,150	2017.08.31. (5년)	2019.09.17.	36	1,890
18	-	-	15,000	7,500	2019.06.26. (5년)	2020.05.21.	50	6,250
19	-	-	4,500	3,150	2017.08.31. (5년)	2020.05.20.	28	1,470
20	-	-	2,640	1,200	2018.12.11. (5년)	2021.11.17.	24	480
21	-	-	5,000	2,000	2019.04.09. (5년)	2021.11.17.	28	933
22	-	-	10,000	4,000	2019.03.18. (5년)	2020.12.01.	40	2,667

주: 1. 보조금 환수금 = 보조율 × (잔여 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 × 총사업비 + 이득금)

자료: ●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재구성.

일련번호 3

용 인 시

주 의 요 구

제 목 2019년 ㄴ사업 보조금 정산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과)

회 계 연 도 2019년

내 용

1. 업무 개요

☆국 ○과는 2019년 ㄴ사업[6] 추진을 위하여 ㄱ법인 ㈜■■(이하 ㈜■■)에 보조금 15억 원(도비 1억5천만 원, 시비 13억 5천만 원)[7]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인 ㈜■■은 [표 1]과 같이 2019년 ㄴ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2019년 ㄴ사업 보조금 시설공사 등 추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정산 사업비(천원)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3,235,555**	**1,497,840**	**1,737,715**			
ㄱ 및 체험장 건축공사	2,322,000	1,161,000	1,161,000	2,322,000	수의계약	□□(주)
ㄴ 생산시설 설치	487,542	243,771	243,771	487,542	수의계약	㈜▣▣ (분할계약)
ㄷ시설 설치	53,900	26,950	26,950	53,900	수의계약	
ㄹ 설치	284,713	23,404	261,309	284,713	수의계약	
ㅂ차(소매용)	25,160	11,595	13,595	25,160	수의계약	目目(주)
ㅁ차(체험행사용)	62,240	31,120	31,120	62,240	수의계약	目目(주)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

6) ㄴ사업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생산자단체: ㄴ 생산력의 증진과 ㄴ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ㄴ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7) 사업비 부담비율 : 도비 5%, 시비 45%, 생산자단체 자부담 50%

2. 관계 규정 등(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2019. 9. 25.)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경기도 친환경ㄴ과는 2019. 3. 25. 용인시에 2019년 ㄴ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시 '보조사업자는 공사, 용역, 기계, 장비, 물품 구입 시 시장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고 실거래가격, 시장물가 정보지 등 산정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등 보조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일반사항,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건을 함께 통보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5호, 2019. 5. 28.)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이상인 경우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 원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는 1억 원 초과)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과는 2019년 ㄴ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교부 조건을 명시하고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2019년 ㄴ사업 보조금 교부 집행 부적정

경기도 ▲과는 2019. 3. 25. 2019년 ㄴ사업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면서 일반사항, 보조사업 수행, 정산에 대한 교부 조건을 명시하여 市 ○과로 공문을 시달하였고, ○과는 2019. 9. 26. ㈜■■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과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및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데도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이 중 보조금이 15억 원을 차지하는 동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 및 경기도의 교부 조건을 포함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교부 조건만을 명시하여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 결정하였다.

결국 ㈜■■은 [표 2]와 같이 ㄱ공사 등 총 4건, 31억 4,815만 원의 물품 구매 및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공사감리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 및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 전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하나 가공공장 및 체험장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소방설비공사 감리가 포함되어 감리 대상인 시공업체 □□㈜에서 소방공사 감리를 발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정산 사업비(천원)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3,148,155	1,455,1250	1,693,030	3,235,555		
ㄱ건축공사	2,322,000	1,161,000	1,161,000	2,322,000	수의계약	□□(주)
ㄴ생산시설 설치	487,542	243,771	243,771	487,542	수의계약	㈜▣▣ (분할계약)
ㄷ시설 설치	53,900	26,950	26,950	53,900	수의계약	
ㄹ 설치	284,713	23,404	261,309	284,713	수의계약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2019년 ㄴ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과는 ㈜■■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자료 제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 및 조건을 이행하여 수행하였는지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그 산정의 명확한 근거와 정산서류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 "ㄱ건축공사"의 사업비 중 산재, 고용보험 등 1억 2,337만 원의 금액[8]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상세 내역 등의 실적 증빙을 갖추어 ○과에 정산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공사계약에서 산출한 금액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을 정산서류로 제출하였고 ○과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8) "ㄱ건축공사" 관련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내역

(단위: 천원)

번호	항 목	금 액	번호	항 목	금 액	번호	항 목	금 액
합계: 총 8건, 123,379천원								
1	산재보험료	19,905	4	국민연금 보험료	23,886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887
2	고용보험료	4,618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59	8	환경보전비	5,271
3	국민 건강 보험료	17,145	6	퇴직 공제 부금비	12,208			

요청 및 확인하지 않고 이를 정산처리하였다.

또한 “ㄱ공사” 사업비 중 □□㈜은 실제 소방 감리용역을 200만 원으로 계약[9]하였으나, ○과는 보조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 산정 시에는 300만 원으로 과도하게 산정한 자료만을 인정하여 증빙자료 없이 정산처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과는 정산 금액에 대하여 실거래가격, 시장물가 정보지 등 산정 근거를 확보하여 정산 금액이 실제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금액에 합당한지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함에도 공사금액의 단가 계산에 대한 산정이 명확하지 않고, 금액 일부는 견적가로 되어 있는 등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정산서류로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입금증만을 확인하고 정산처리를 완료하는 등 보조금 정산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9) 감사 기간에 감리 계약사항을 확인한 결과 □□㈜은 ▶▶와 2019. 8. 1.에 “용인 ■■ 체험장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도급액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함.

관계기관 의견 ☆국 ○과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이상인 경우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에서 직「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 원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는 1억 원 초과)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과는 총 사업비가 30억 원 되는 대규모 사업인 ㄱ사업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했다.

조치할 사항 **☆국 ○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4

용 인 시

주 의 요 구

제 목 ㄴ 단체 사무실 운영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과)

회 계 연 도 2018년 ~ 2021년

내 용

1. 업무 개요

☆국 ○과는 안정적인 ㄴ인의 권익향상 활동지원과 후계ㄴ경영인 육성 등을 위하여 ◆◆(이하 ''라 한다.)와 ◇◇(이하 '◇◇'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10]하고 정산처리하고 있다.

2. 보조금 전용 계정 사용 관리·감독 소홀

가. 관계 법령 등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

10) ◆◆, ◇◇ 운영비 보조금 사업비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	◆◆			◇◇		
	사업비	보조금(시비)	자부담	사업비	보조금(도비+시비)	자부담
2018	51,250	41,000	10,250	59,403	53,953	5,450
2019	43,750	35,000	8,750	74,672	59,672	15,000
2020	45,000	36,000	9,000	38,926	27,999	10,927
2021	29,167	21,750	7,417	12,562	8,325	4,237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려는 때에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에 따라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나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한 경우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예외로 규정함과 동시에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인시 지방보조금 집행 지침」제2장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Ⅱ.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및 보조금 결제전용(체크)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조금 관리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통장으로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단체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

부서는 자부담금의 예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과는 ㄴ인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여부 및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 개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의 완료 혹은 회계연도 종료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 검토하는 경우에는 통장의 거래내역을 받아 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기간(2021. 12. 13. ~ 12. 27.) 동안 ㄴ인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사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 사무실 운영비로 연평균 3,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보조금 교부 시 ◆◆에서 제출한 통장 및 카드가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별도 개설한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보조금 정산 시에도 통장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 위 기간 동안 운영비 보조금을 별도의 전용 통장 및 전용 카드 없이 ◆◆ 회원의 회비와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는 등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과는 자부담 의무가 있는 ◇◇[11]에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11) ◇◇는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2.설립목적과 사업목적이 ◇◇의 목적(여성 ㄴ인의 고충상담, 문화활동 지원, 농어촌 정착 도모)과 부합하며 3.사업에 필요한 시설 조건의 단체가 여성 ㄴ인 고충상담, 문화강좌 운영, 도농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선정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용인시의 ◇◇는 ▨▨에서 운영하고 있음.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자부담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가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예치하여 집행하지 않고 농협 조합원들의 건강검진 예산 등이 포함된 복지증진비와 함께 집행하고 있었는데도 ○과는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하여 집행하도록 하거나 자부담 전용 통장을 별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예산과 혼용하여 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회계 처리하고 있었다.

3.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 소홀

가. 관계 법령 등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인시 지방보조금 집행 지침」제3장 보조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Ⅱ.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에 따르면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로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보조금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이 지급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가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충분한지 확인하고, 집행 내용 및 금액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기간(2021. 12. 13. ~ 12. 27.) 동안 운영비 보조금의 정산 실태를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세부적인 검토 없이 적정 처리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과는 ◆◆가 [표 1]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ㄱ 유지관리비, ㄴ 수수료 등 51건 1,086,200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면서 실제 금원의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기 간이영수증만을 정산서류로 제출하거나 29건 1,390,000원의 ㄷ비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거리, 목적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서류 없이 주유 영수증만을 정산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시정 등의 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하였다.

[표 1] ◆◆ 운영비 보조금 정산서류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연 도	집행유형	건	금 액	내 용
2018	ㄱ유지비	10	99,000	간이영수증 외 지출증빙 없음
	물품구입비	2	41,000	
	ㄷ비	6	300,000	차량운행일지 없음
2019	ㄱ 유지비	12	118,800	간이영수증 외 지출증빙 없음
	ㄴ 수수료 (▒▒)	3	150,000	

	ㄷ비	5	271,000	차량운행일지 없음
2020	ㄱ유지비	11	108,900	간이영수증 외 지출증빙 없음
	ㄴ수수료 (▒▒)	2	100,000	
	ㄹ 구입비	1	369,500	
	ㄷ비	11	510,000	차량운행일지 없음
2021	ㄱ유지비	10	99,000	간이영수증 외 지출증빙 없음
	ㄷ비	8	380,000	차량운행일지 없음

자료: ○과 ㄴ정책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과는 ◇◇가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통장에 예치하지 않고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경우 지출의 주체가 ▨▨이 되었고, ▨▨과 동일한 법인인 원삼㈜㈜에서 구입한 물품은 동일한 법인거래 간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표 2]와 같이 외상 영수증[12]만을 정산서류로 제출하여 자부담금의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보완 등의 조치 없이 정산 처리하였다.

[표 2] ◇◇ 운영비 보조금 정산서류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연 도	집행유형	건	금 액	내 용
2018	물품구입비	12	179,560	·외상거래 영수증 외 지출증빙자료 없음
	ㅁ체험(부정기사업) 운영비	3	100,000	
2019	물품구입비	3	94,960	·외상거래 영수증 외 지출증빙자료 없음
	ㅁ체험(부정기사업) 운영비	4	100,000	
2020	물품구입비	1	9,760	·외상거래 영수증 외 지출증빙자료 없음
2021	물품구입비	9	451,400	·외상거래 영수증 외 지출증빙자료 없음

자료: ○과 ㄴ정책팀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과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서류가 집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미비함에도 정산서류의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을 완료하는 등 운영비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12) 외상영수증은 거래인자, 물품 내역, 금액 등이 명시되어있으나 결제금액 대신 '외상액'이 표기되어 있으며, 원삼농협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외상 영수증 발급 후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 ○과는 ◆◆ 사무실 운영비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 사용 여부, 정산 서류를 면밀히 검토 했어야 하나 다양한 사업 추진 등 업무 과중으로 업무처리에 소홀하였으며 향후 사업 관리·감독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 운영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물품 구입 시 같은 법인인 ◍◍를 이용하여 법인 카드 사용 처리가 불가한 사정으로 형식상 외상 영수증을 발급받아 농협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하여 실제 입금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정산서 제출 시 증빙자료가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는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과가 ◇◇의 자부담금 예치 및 보조금 전용 계좌사용을 관리·감독하였으면 ▨▨에서 구입한 물품이 동일한 법인이라는 사유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정산 시 정산서류를 통하여 지출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내부적인 회계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했다.

조치할 사항 ☆국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고, 보조금 정산 시 정산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5

용 인 시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ㅌ조성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과)

회 계 연 도 2018년 ~ 2021년

내 용

1. 업무 개요

☆국 ○과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산물브랜드 인지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ㅌ조성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쌀 생산자 단체(이하'생산단체'라 한다.)에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ㄷ, ㄹ 등의 구입비로 9억9천만원(전체 사업비 19억8천만원의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 사업대상자 변경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가. 관계 법령 등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8~2021년 'ㅌ조성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과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내용, 사업비, 농가별 신청 내역[13],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이 담긴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는 ㅌ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생산단체[14]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따라 보조금의 실제 수령 대상자인 신청 농가가 보조금 사업의 목적 수행에 적합한 대상인지 조사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생산단체가

13) 농가별 신청내역에는 농가의 이름, 주소, 면적 및 사업비, 보조사업 자재명, 수량 등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14) 'ㅌ조성사업'의 사업대상자 및 보조사업자는 ◐◐이며, 생산단체는 농산물 생산 개별 농가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2021. 12. 13. ~ 12. 27.) 동안 'ㅌ조성사업'의 추진 실태 확인 결과 보조사업자인 ◒◒(이하 '◒◒'라 한다.)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표 1]과 같이 지급 대상농가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과는 정산 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 확정 및 정산 농가수 현황

(단위 : 개)

2018		2019		2020		2021	
확정	정산	확정	정산	확정	정산	확정	정산
163	161	175주)	180	178	182	189	188

주) ◒◒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농가의 수가 174농가로 기재되어 있고, ○과에서 대상자 확정 통보 시에도 174농가로 확정통보하였으나, 세부 농가별 신청내역 및 정산서류를 확인한 결과 175농가로 확인됨
자료 : ○과 생산지원팀 제출자료 재구성

○과는 2018. 3. 12. ▨▨을 통하여 ◒◒로부터 163 농가가 친환경 농자재 구입 등을 위하여 1억9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ㅌ 조성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2018. 4. 4.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그런데 ◒◒는 사업대상자로 승인된 163농가 중 A, B, C 농가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년도 10월[15]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A농가에게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161 농가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후 사업 완료 보고를 하였다.

15)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은 매년 10월을 기준이며 인증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과는 ◒◒가 제출한 사업완료신고 및 정산관련 서류를 통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농가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없이 같은 해 11. 1. '정산 결과 이상 없음'으로 정산보고를 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반복적으로 사업계획을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16)]

[표 2] ◒◒ 보조금 지급 대상 농가 변동내역

(단위 : ㎡,원)

연도	확정된 대상자 중 미지급 농가			미확정 대상자 중 지급 농가			
	농가명	재배필지	보조금액	농가명	재배필지	보조금액	비고
2018	-	2,396	229,050	-	3,741	752,670	2018.10월 인증
	-	3,741	384,350				
	-	1,647	153,500				
2019	-	2,565	251,950	-	3,602	362,275	2019.10월 인증
				-	8,969	29,100	
				-	19,488	532,500	
	-	12,248	1,197,200	-	7,640	281,800	
				-	2,721	219,925	
	-	7,640	745,900	-	2,239	53,250	
				-	2,229	53,250	
				-	1,600	53,250	
2020	-	41,187	4,001,675주)	-	2,437	222,725	2020.10월 인증
				-	6,451	593,825	
	-	1,187	113,850	-	3,998	361,650	
	-	24.045	2,338,000	-	1,032	101,300	
				-	3,833	1,066,725	
	-	5,633	542,025	-	5,233	427,775	
				-	4,570	2,597,575	
	-	5,233	1,838,350	-	7,726	737,275	
				-	2,441	224,825	

16) 시에서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지 않았으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사업기간 도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환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연도	확정된 대상자 중 미지급 농가			미확정 대상자 중 지급 농가			
	농가명	재배필지	보조금액	농가명	재배필지	보조금액	비고
2021	-	9,923	745,500	-	9,923	788,250	2021.10월 인증
	-	2,028	153,200				
	-	3,384	255,700	-	10,050	487,350	
	-	11,551	1,041,900	-	5,797	271,500	

주) 개별 농가 농자재 신청기준 (◐◐ 공동사용 ㅈ 2대, ㅊ 1대 보조금액은 제외)
자료 : ○과 생산지원팀 제출자료 재구성

3.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 등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9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ㅁ과는 친환경농법에 사용되는 ㅇ가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 해야한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ㅇ 관리지침」에서 ㅇ 지원 사업 시 수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조사업비 회수 조치 및 영구 배제 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는 '2020년 ㅌ조성사업' 계획서에 영농 이용 후 ㅇ 수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거 의무 불이행 시 보조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으며 차년도 보조사업을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과는 2020년도 ‘ㅌ조성사업’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인 생산 단체에게 사업 완료 후 ㅇ 수거 의무 및 의무 불이행 시 받을 제재를 교부 조건에 명시하여 통보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으로 ㅇ를 구매하여 영농에 사용한 농가가 의무 이행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차년도 보조사업 배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2021. 12. 13. ~ 12. 27.) 동안 ‘ㅌ조성사업’ 완료 후 ㅇ 수거 의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과는 2020. 4. 7.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면서 교부결정서에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교부 조건을 명시하였을 뿐 ㅇ 수거 의무 및 미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또한 2020. 3. 26. ○과는 ◒◒와 ♤♤에 ‘2020년 ㅌ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를 하면서 2020. 7. 15. ~ 7. 31., 11. 16 ~ 11. 30. 두 차례에 걸쳐 ㅇ 일제 수거 기간을 운영하니 운영기간 동안 농경지 및 농수로를 대상으로 집중 수거하라고 통보하면서도 보조사업자의 ㅇ 수거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들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17]

이와 같이 친환경 농법에 사용되는 ㅇ가 환경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17) ○과-00000(20.8.12.)호로 경기도에‘ㅇ 일제수거 운영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수거량, 참여인력만 보고하였을 뿐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농가 및 농지의 수거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지 않았고, 보조금 수령 농가의 ㅇ 수거 의무 이행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해당 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에서 자연사하지 않은 ㅇ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국 ○과는 사업계획 임의 변경에 따른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 감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농림부에서 「ㅇ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2020년도부터 보조사업자가 ㅇ 수거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확인했어야 하나 다양한 사업 추진 등으로 업무처리에 소홀했다고 하면서 향후 ㅇ를 수거하고 실적을 보조사업자가 제출하게 하는 등의 개선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 ○과장은

① 보조금의 실제 수령 대상이 사업 도중 변동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② 친환경 ㄴ 분야에서 보조금 사업 추진 시 ○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교부 조건에 명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③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의 ○ 수거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6

용 인 시

주 의 요 구

제 목 ㅅ차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과)

회 계 연 도 2020년 ~ 2021년

내 용

1. 업무 개요

●과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ㅅ 유통을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에 따라 ㅁ 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표 1]과 같이 ㅅ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ㅅ차량 지원사업 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업량	합계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도비	시비	
2020년	5대	125,000	37,500	-	37,500	50,000
2021년	5대	125,000	37,500	12,500	25,000	50,000

자료 :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ㅅ차량[18] 지원 사업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ㅅ차량 지원 대상자는

18) ㅅ차량의 구입방법은 제조사가 냉동탑차로 제품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와 일반 화물차를 구입한 후 ㅅ기능을 추가하여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됨.

ㅅ유통을 희망하는 ㅇ 수집판매업체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ㅅ차량 지원대상 1순위~3순위는 ㅅ차량 미보유 업체로 전년도 평균 일일처리물량이 일정개수[19] 이상이어야 하며, 보유한 ㅅ차량의 노후화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 중 ㅅ차량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4순위가 된다.

특히 4순위 경우 차량구입과 동시에 기존차량을 폐차를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다.

한편 지원신청이 사업량(지원대상 업체수)을 초과할 때는 자체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는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신청업체의 ㅅ차량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미보유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하고, ㅅ차량 미보유 업체의 신청이 사업량에 미달할 경우 ㅅ차량 보유업체 중 노후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1. 12. 13. ~ 12. 27.) 중 ●과가 추진한 ㅅ차량 지원사업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과가 2020년 7월과 2021년 4월에 「ㅅ차량 지원사업」을 공고[20]하자 [별표] “2020년 ~ 2021년 ㅅ차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내역”과 같이 연도별 각각 9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그 중 5개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19) 1순위(3천~14천개), 2순위(14천개 초과), 3순위(3천개 미만)
20) 연도별 공고일 : 2020.7.22. 2021.4.28.

가. ㅅ차량 보유 여부 확인 소홀

●과는 2020년 ㅅ차량 지원사업을 신청한 9개 업체 중 ◰◰(대표 : A) 등 5개 업체를 ㅅ차량 미보유를 이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대표 : B)과 ◴◴(대표 : C) 등 4개 업체에 대하여는 ㅅ차량 보유를 이유로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그런데 ●과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 등 2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ㅁ, ㅂ)의 경우 ㅅ차량이 아닌 물품적재 시설만 갖춘 화물차량인데도 확인을 소홀히[21] 한 채 ㅅ차량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과는 2021년 ㅅ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표 : D)의 경우 대표 개인명의로 ㅅ차량 4대를 보유[22]하고 있는데도 ㅅ차량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노후차량으로 임의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과는 2021년 ㅅ차량 지원사업에 신청한 9개 업체 중 [별표] “2020년 ~ 2021년 ㅅ차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내역”과 같이 ◘◘(대표 : E) 등 3개 업체는 ㅅ차량 미보유 이유로, ▽▽(대표 : F) 등 2개 업체는 ㅅ차량의 노후화로 새로운 ㅅ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이 보유한 ㅅ차량의 경우 2019년 8월식으로 불과 2년밖에 경과하지 않아 노후된 차량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과가 ㅅ차량 보유를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대표: G)이 보유한 ㅅ차량은 2014년 식으로 ▽▽이 보유한 차량보다 5년여 노후화되었는데도

---

21) ●과는 2020. 8. 11. 신청업체의 ㅅ차량 보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20. 8. 11. “ㅅ차량 소유현황 자료요청”(●과-00000)의 공문을 대중교통과로 송부한 후 수신자 오류를 인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로부터 유선으로 문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22) 00마0000(‘15년 3월식), 00어0000(’19년 7월식), 00버0000(‘21.1월식), 00라0000(’14년 3월식)

㈜◈◈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을 선정[23]하였다.

이와 같이 ●과의 2021년도 노후화된 냉동차량 지원사업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특정업체를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과 담당자는 사업지침에 적합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업무처리가 미흡하였다면서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절차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 ●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23) 감사시 담당공무원은 ▽▽이 2020년도 사업에도 신청했고 2021년 수요조사에도 참여했다는 사유로 선정했다고 진술함.

[별표]

2020 ~ 2021 ㅅ차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구분	연번	업체명	대표자명	선정여부	선정 및 미선정 사유 (●과 검토)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결과
2020년	1	-	-	**선정**	ㅅ차량 없음	
	2	-	-	**선정**	ㅅ차량 없음	
	3	-	-	**선정**	ㅅ차량 없음	
	4	-	-	**선정**	ㅅ차량 없음	
	5	-	-	**선정**	ㅅ차량 없음	
	6	-	-	미선정	ㅅ차량보유 ○대	
	7	-	-	미선정	ㅅ차량보유 ○대	일반 화물차량
	8	-	-	미선정	ㅅ차량보유 ○대	
	9	-	-	미선정	ㅅ차량보유 ○대	일반 화물차량
2021년	1	-	-	**선정**	ㅅ차량 없음	
	2	-	-	**선정**	ㅅ차량 없음	
	3	-	-	**선정**	ㅅ차량 없음	
	4	-	-	**선정**	(노후차량)	2019년식
	5	-	-	**선정**	(노후차량)	2010년식 일반 화물차량
	6	-	-	미선정	차량 ○대 소유	2014년식 1대 2015년식 2대 2016년식 1대 2017년식 1대 (2015년식 중 1대는 일반화물차량)
	7	-	-	미선정	차량 ○대 소유	
	8	-	-	미선정	차량 ○대 소유	
	9	-	-	미선정	차량 ○대 소유	2019년식

주: 1. ◎◎, ㉥㉥, □□의 대표 C는 동일인

2. 2021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반도체 수급문제로 차량출고가 지연되어 보조금 미지급 상태이며 예산은 이월되었음.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7

용 인 시

통 보

제 목 ㄷ 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과)

회 계 연 도 2019년 ~ 2021년

내 용

1. 업무 개요

●과는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소독실시, 방역교육, 홍보 등 ㄷ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로 용인시 ㄷ(단장:A)을 선정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표 1]과 같이 3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검사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1] ㄷ 지원사업 현황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 (시비 100%)	보조금 사용처
ㄷ 지원사업	ㄷ (단장:A)	'18. 1월~ 12월	75,000	ㄹ 수당 ㅁ 운영비 ㅂ 구입 등
		'19. 1월~ 12월	75,000	
		'20. 1월~ 12월	90,000	
		'21. 1월~ 12월	90,000	

자료 :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5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의 유형별 회계서류 작성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단순인건비 지급대상은 사업추진을 위해 고용하는 임시근로자이며 지급방법은 개인별 계좌이체로 하고 근무일지에 자필서명을 받고 입금계좌 사본을 첨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는 보조금 정산 시 보조사업자 대표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조사업 기간 외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순인건비 집행 시에는 개인별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당한 근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1. 12. 13. ~ 12. 27.) 중 ㄷ 지원사업 정산서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지출결의서 미작성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과는 ㄷ 보조금 정산 시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위 사업단이 보조금 집행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명세서 등만 제출하였음에도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별표] “보조사업 기간 외 지출내역”과 같이 전년도 보조사업 기간에 집행한 방역차량 주유비 609천원을 당해년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는데도 적정 정산 처리하였다.

나. 단순인건비 집행 부적정

●과는 보조사업자가 단순인건비 지급 시 개인별로 계좌이체를 하고 근무일지의 자필서명을 하였는지 정산검사 시 확인하여야 하나 개인별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근무자 특정이 불가능하고 차량운행일지는 작성하고 있었으나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된 운전자와 실제 방역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근무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P 등 6인에게 매월 방역수당[24]을 지급하고 있었다.

---

24) 연도별 방역수당 지급내역(1일/9만) : 2019년(34,830,000원), 2020년(36,180,000원), 2021년(38,970,000원)

더욱이 ●과는 보조사업자가 방역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개인이 아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실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도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국 ●과장은

① 앞으로 보조금 정산 시 지출결의서 작성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보조사업자의 근무(차량)일지를 확인하여 정당한 근무자에게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보조사업 기간 외 지출내역

(단위: 원)

연번	주유일	결제일	유종	주유금액	차량번호	주유소명
1	2019.12.24.	2020.2.5.	휘발유	27,000	-	-
2	2019.12.24.	2020.2.5.	경유	17,000	-	-
2020년 계				44,000		
1	2020.12.8.	2021.2.1.	경유	30,000	-	-
2	2020.12.8.	2021.2.1.	휘발유	40,000	-	-
3	2020.12.9.	2021.2.1.	휘발유	40,000	-	-
4	2020.12.9.	2021.2.1.	경유	14,700	-	-
5	2020.12.18.	2021.2.1.	경유	51,000	-	-
6	2020.12.18.	2021.2.1.	휘발유	11,000	-	-
7	2020.12.26.	2021.2.1.	휘발유	26,000	-	-
8	2020.12.26.	2021.2.1.	경유	30,000	-	-
9	2020.12.29.	2021.2.1.	휘발유	24,225	-	-
10	2020.12.17.	2021.2.2.	경유	46,000	-	-
11	2020.12.17.	2021.2.2.	휘발유	47,000	-	-
12	2020.12.9.	2021.2.2.	경유	50,000	-	-
13	2020.12.9.	2021.2.2.	휘발유	26,000	-	-
14	2020.12.17.	2021.2.2.	경유	90,000	-	-
15	2020.12.17.	2021.2.2.	휘발유	40,000	-	-
2021년 계				565,925		
합계				609,925		

자료: ●과 보조금 정산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8

용 인 시

주 의 요 구

제 목 ㄷ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

회 계 연 도 2017~2021년

내 용

1. 업무 개요

☆국 ●과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ㄷ농가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적인 ㄷ 발전 도모를 위하여 ◇◇(회장 A)와 ◆◆(회장 B)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ㄷ 지원사업을 하며 보조금 2억 9,080만 원을 교부하고 정산검사를 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전에 보조금 통장[25](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 사본의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사업비 집행 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조례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및 제22조(실적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3조(정산검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고, 강사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은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

25)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한다. 즉,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 가능.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그러므로 ●과는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서류와 실적보고서 등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과 교부조건 등에 부합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ㄷ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부적정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1. 12. 13.~12. 27.) 중 ●과에서 추진한 최근 5년간의 ㄷ 지원사업 보조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표] ㄷ 지원사업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현황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연도별 계	자부담액	보조금(시비)	◆◆	◇◇
합계	609,707	318,899	290,808	168,288	122,520
2017년	92,472	47,472	45,000	30,000	15,000
2018년	121,890	61,890	60,000	40,000	20,000
2019년	130,486	68,038	62,448	42,448	20,000
2020년	132,116	72,116	60,000	40,000	20,000
2021년	132,743	69,383	63,360	15,840	47,520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과는 관리기준에 따라 민간 보조사업자인 ◆◆ 등에 보조금 교부 시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1개 사업에 1개의 계좌)을 개설하여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과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 등 2개 단체에 [표]와 같이

2억 9,080만 원의 ㄷ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는 전용통장의 개설이나 기존통장의 잔고 상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들 단체의 회비 입출금 통장(계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었다.

나. ㄷ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과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산정 근거, 보조금 전용통장의 전체 거래내역과 정산서류 등을 제출받아 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정산검사 하여야 한다.

또한 ●과는 정산검사 시 보조사업자가 인건비 등 각종 수당(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과 관리기준 등에 따라 원천징수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는 ㄷ 지원사업의 정산검사 시 보조사업자인 ◆◆ 및 ◇◇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별표] “ㄷ 지원사업 인건비 지급 명세”와 같이 A 등 10명에게 인건비 계 6억 970만 원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매년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하였다.

그 결과 감사일 현재까지 ㄷ 지원사업이 매년 보조사업으로 집행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보조금이 교부되고 형식적인 정산검사로 사업이 완료되는 등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 ●과에서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ㄷ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정산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 ●과장은**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검사 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ㄷ 지원사업 인건비 지급 명세

(단위: 원)

연도	보조사업자	대상자	사업기간	인건비지급내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계				609,707,400	290,808,000	318,899,400	
2017년	◇◇	-	1월~11월	30,550,000	15,000,000	15,550,000	
	◆◆	-	1월~10월	22,559,000	11,279,500	11,279,500	
		-	1월~5월	8,448,000	4,224,000	4,224,000	퇴사
		-	1월~6월	12,334,000	6,167,000	6,167,000	퇴사
		-	7월~10월	9,264,500	3,671,250	5,593,250	
		-	7월~10월	9,316,500	4,658,250	4,658,250	퇴사
2018년	◇◇	-	1월~12월	40,550,000	20,000,000	20,550,000	
	◆◆	-	1월~12월	36,668,000	17,839,000	18,829,000	
		-	1월~12월	22,267,700	11,046,250	11,221,450	
		-	1월~12월	22,404,700	11,114,750	11,289,950	퇴사
2019년	◇◇	-	1월~12월	45,590,000	20,000,000	25,590,000	
	◆◆	-	1월~12월	36,020,000	18,010,000	18,010,000	
		-	1월~12월	22,764,500	11,382,250	11,382,250	
		-	1월~12월	22,831,500	11,415,750	11,415,750	퇴사
		-	11월~12월	3,280,000	1,640,000	1,640,000	퇴사
2020년	◇◇	-	1월~12월	45,000,000	20,000,000	25,000,000	
	◆◆	-	1월~10월	27,130,000	12,379,000	14,751,000	
		-	1월~10월	28,714,000	13,171,000	15,543,000	
		-	1월~10월	25,932,000	11,780,000	14,152,000	
		-	1월	1,340,000	670,000	670,000	퇴사
		-	2~3월	4,000,000	2,000,000	2,000,000	퇴사
2021년	◇◇	-	1월~12월	37,450,000	15,840,000	21,610,000	
	◆◆	-	1월~12월	33,205,000	16,476,000	16,729,000	
		-	1월~12월	37,170,000	18,585,000	18,585,000	
		-	1월~8월	22,518,000	11,259,000	11,259,000	
		-	11월~12월	2,400,000	1,200,000	1,200,000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9

용 인 시

주 의 요 구

제 목 ㄷ분야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 (●과)

회 계 연 도 2017~2021년

내 용

1. 업무 개요

☆국 ●과는 ㄷ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연친화적인 ㄷ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ㄷ농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2020년도 경기도 ㄷ시책 추진계획” ㄷ환경 개선사업 및 ㅈ 강화사업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는 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1년 ㅊ 지원사업 추진계획[●과-0000(2021.03.03.)]”에 따르면 ㄷ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및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배정기준 미만 소규모 농가[26]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26) ㅊ 사업량 배정기준[사육규모는 ㄷ업허가(등록) 두수]

또한 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등 [표]와 같이 ㄷ분야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다.

[표] ㄷ분야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연도	사업명	지원 제외 기준
2019년	ㄱ지원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농가 (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2020년	ㄷ환경 개선사업	
2020년	ㅅ 지원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 (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2020년 2021년	ㅈ 강화사업	
2021년	ㅊ 지원사업	ㄷ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및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배정기준 미만 소규모 농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 (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2021년	ㄱ 지원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농가 (고발 이상 처분일로부터 2년간)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때에는 경기도 ㄷ시책 및 자체 사업추진계획 등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1. 12. 13. ~ 12. 27.) 중 최근 5년간 ㄷ분야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점검한 결과, ●과에서는 2019. 10. 2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을 고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축종	사육규모	배정량
한우, 육우	5 ~ 50두	10톤
	51 ~ 100두	20톤
	101두 이상	30톤

2020. 01. 04. “2020년 ㄷ환경 개선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 12. 13.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A을 2020.03.03. “2020년 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별표] “ㄷ분야 보조금 지원제외자 보조금 지원 현황”과 같이 지원 제외 대상자 12명에게 1억 1,8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27)]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 ●과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국장 ●과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27) ㄷ분야 보조금 신청현황

사업명	신청자(명)	선정자(명)	지원제외자 선정현황(명)
2019년 ㄱ 지원사업	35	21	1
2020년 ㄷ환경 개선사업	166	152	2
2020년 ㅅ 지원사업	20	7	1
2020년 ㅈ 강화사업	28	23	2
2021년 ㅊ 지원사업	265	197	3
2021년 ㄱ 지원사업	16	14	1
2021년 ㅈ 강화사업	38	28	2

[별표]

ㄷ분야 보조금 지원 제외자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액	사업자 선정일자	지원 제외 사유	고발 등 처분일자
	성명	주소	지원내역				
계				118,500			
2019년 ㄱ 지원사업	-	처인구	-	7,500	2019.03.0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17.12.21.
2020년 ㄷ환경 개선사업	-	처인구	-	70,000	2020.01.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결과: 구약식**)	2019.10.22.
	-	처인구	-	1,500	2020.03.0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19.11.11.
2020년 ㅅ 지원사업	-	처인구	-	10,000	2020.02.28.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019.12.13.
2021년 ㅊ 지원사업	-	처인구	-	1,500	2020.03.03.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019.11.21.
	-	처인구	-	1,500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019.12.13.
	-	처인구	-	1,500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019.04.03.
2021년 ㄱ 지원사업	-	처인구	-	10,000	2021.09.2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결과: 구약식**)	2019.12.04.
2020년 ㅈ 강화사업	-	처인구	-	3,000	2020.03.02.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019.09.24.
	-	처인구	-	3,000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019.01.15.
2021년 ㅈ 강화사업	-	처인구	-	6,000	2021.02.28.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019.09.24.
	-	처인구	-	3,000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020.12.10.

일련번호 10

용 인 시

주 의 요 구

제 목 ㅁ 운영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과)

회 계 연 도 2018~2020년

내 용

1. 업무 개요

☆국 ◎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반려생활의 지원과 올바른 반려문화 교육을 통해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문화 정착 및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ㅁ 운영 사업을 하였다.

2. 관계 규정 등(판단기준)

「지방재정법」(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2조의4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 3. 30.)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전에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 사본의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사업비 집행 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28].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을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고, 강사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인시 지방보조금 집행지침에 강사수당 및 회의수당은 보조사업자의 내부직원은 지급이 불가하며, 강사료 정산 시에는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하고 인건비 정산 시에는 근무일지에 자필서명을 받고 입금 계좌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 보조금 관리·감독부서는 보조금 정산 시 이와 같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8) 보조금 교부 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ㅁ 운영 보조금 교부 부적정

이번 감사기간(2021. 12. 13.~12. 27.)에 ㅁ 보조금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과는 2020년 ㅁ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 3. 2.에 2020년 ㅁ 운영사업자 재공고[29]를 하였고, (사)★★는 2020. 3. 10.에 총사업비 7,350만 원(보조금 7,000만원, 자부담 350만 원)으로 2020년 ㅁ 운영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과는 지원사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30] (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31]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보조금 7,000만 원, 자부담 350만 원)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과는 보조사업(총사업비 7,350만 원, 보조금 7,000만 원, 자부담 35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 (사)★★의 자부담 350만 원의 예치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20. 4. 20.에 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다.

결국 보조사업자는 2020. 11월까지 사업 기간인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종료 시점인 2020. 11. 11.에 자부담 350만 원을 입금하여 자부담을 당일 전액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

29) 2020. 2. 13. 2020년 ㅁ 운영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모집되지 않아 재공고를 실시 함.

30) '20년 제2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모대상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심사함. (2020. 3. 25.~27. 서면 심의로 심사)

31) 2020년 ㅁ 운영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과-0000, 2020. 4. 16.)

나. ㅁ 운영 보조금 정산 부적정

◎과는 보조사업자가 강사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보조금을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ㅁ 보조금 인건비 정산 확인 내역”과 같이 보조사업자인 (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ㅁ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사 및 인력 운영에 대하여 ㈜◉◉ 등 11개 업체에 위탁하여 인건비성 경비로 1억 698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증명서류를 갖추어 정산 요청하여야 하고, ◎과는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과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인력업체의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정산 결과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원천징수 증빙서류를 추가 확인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였다.

그 결과 총 38건, 1억 380만 원의 인건비가 원천징수 대상이 됨에도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과는 보조사업자의 내부직원에게는 강사료와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2019년 용인시 ㅍ 보조사업 시 보조사업자 (사)★★의 교육부 팀장 A에게 강사료와 회의 수당으로 50만 원이 지급[32]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8년부터 2020년 ㅁ 보조사업의 인건비 총 42건 1억 698만 원에 대하여 근무일지 및 강의 확인서, 인건비(강사료) 지급내역서가 없음에도 정산 처리하는 등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32) 내부직원 지급 상세 내역(총 50만 원)
- 2019년 ㅍ 관련 ㅁ 교실 강사비: 30만 원
- 2019년 ㅍ 관련 ㅁ 교실 회의참석수당: 20만 원(10만 원×2회=20만 원)

관계기관 의견　　☆국 ◎과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고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 ◎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ㅁ 보조금 인건비 정산 확인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업연도 (년)	세부사업	인건비 내역	집행금액 (천원)	인력용역회사 (지급처)	확인사항
총 계		총 인건비 42건, 1억698만 원				
소 계		2018년 인건비		27건, 67,800천 원		
1	2018	-	안전요원 200천원×5명=1,000천원	1,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및 근무자 자필서명 없음
2	2018	-	사회자(아나운서) 1,000천원×1명=1,000천원	1,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사회자 이력 사항 없음
3	2018	-	사회자(운동회MC) 1,000천원×1명=1,000천원	1,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사회자 이력 사항 없음
4	2018	-	문화학교 강사 300천원×5명=1,500천원	1,5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5	2018	-	문화학교 보조강사 300천원×5명=1,500천원	1,5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6	2018	-	안전요원(전문훈련사) 300천원×5명=1,500천원	1,5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근무자 자필서명, 훈련사 자격 증빙자료 없음
7	2018	-	업무총괄(축제기획 및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 1개월) 2,000천원×2명=4,000천원	4,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근무자 자필서명, 근무자 관련 이력 사항 없음
8	2018	-	업무보조(업체 및 홈페이지 관리 등, 1개월) 1,500천원×2명=3,000천원	3,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근무자 자필서명, 근무자 관련 이력 사항 없음
9	2018	-	업무총괄(축제기획 및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 2개월) 2,000천원×1명×2개월=4,000천원	4,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근무자 자필서명, 근무자 관련 이력 사항 없음
10	2018	-	업무보조(업체 및 홈페이지 관리 등, 2개월) 1,500천원×1명×2개월=3,000천원	3,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근무자 자필서명, 근무자 관련 이력 사항 없음
11	2018	-	안전요원 200천원×5명=1,000천원	1,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및 근무자 자필서명 없음
12	2018	-	안전요원(훈련사) 300천원×3명=900천원	9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근무자 자필서명, 훈련사 자격 증빙자료 없음
13	2018	-	문화학교강사 300천원×5명=1,500천원	1,5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14	2018	-	문화학교강사 300천원×5명=1,500천원	1,5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15	2018	-	사회자(아나운서) 500천원×2명=1,000천원	1,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사회자 이력 사항 없음

연번	사업연도 (년)	세부사업	인건비 내역	집행금액 (천원)	인력용역회사 (지급처)	확인사항
16	2018	-	사회자(운동회MC) 500천원×1명=500천원	1,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사회자 이력 사항 없음
17	2018	-	문제행동메인강사 300천원×5명×5회=7,500천원	7,5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18	2018	-	문제행동보조강사 200천원×5명×5회=5,000천원	5,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19	2018	-	문제행동진행요원 200천원×5명×5회=5,000천원	5,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및 근무자 자필서명 없음
20	2018	-	건강교실메인강사 300천원×5명×3회=4,500천원	4,5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21	2018	-	건강교실보조강사 200천원×5명×3회=3,000천원	3,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22	2018	-	건강교실진행요원 200천원×5명×3회=3,000천원	3,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및 근무자 자필서명 없음
23	2018	-	명사강의 1,000천원×1명×2회=2,000천원	2,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24	2018	-	교육강사 300천원×4명×2회=2,400천원	2,4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25	2018	-	진행 요원 100천원×4명×2회=800천원	3,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및 근무자 자필서명 없음
26	2018	-	진행요원 80천원×30명=2,400천원	2,400	-	① 근무일지 및 근무자 자필서명 없음
27	2018	-	진행요원 80천원×20명=1,600천원	1,600	-	① 근무일지 및 근무자 자필서명 없음
소 계		2019년 인건비		13건, 18,900천원		
28	2019	-	업무총괄(축제기획 및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 1개월) 2,000천원×2명=4,000천원	4,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근무자 자필서명, 근무자 관련 이력 사항 없음
29	2019	-	업무보조(업체 및 홈페이지 관리 등, 1개월) 1,500천원×2명=3,000천원	3,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근무자 자필서명, 근무자 관련 이력 사항 없음
30	2019	-	ㅁ 수의진료 300천원×3명×1회=900천원	9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진료일지, 진료자 자필서명, 수의사 자격 증빙자료 없음
31	2019	-	ㅁ 안전요원 300천원×5명=1,500천원	1,5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근무일지 및 근무자 자필서명 없음
32	2019	-	ㅁ 사회자(아나운서) 1,000천원×1명=1,000천원	1,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사회자 이력 사항 없음
33	2019	-	ㅁ 강사 300천원×6명=1,800천원	1,8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연번	사업연도(년)	세부사업	인건비 내역	집행금액(천원)	인력용역회사(지급처)	확인사항
34	2019	-	ㅁ 보조 강사 200천원×6명=1,600천원	1,6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35	2019	-	ㅁ 교실 강사 300천원×2명=600천원	6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③ A 내부직원임에도 강사료 지급(30만원)
36	2019	-	ㅁ 교실 보조 강사 200천원×2명=400천원	4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 강사이력,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37	2019	-	ㅁ 교실 운동회 MC 500천원×1명=500천원	5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사회자 이력 사항 없음
38	2019	-	ㅁ 콘서트 명사초청 1,000천원×1명=1,000천원	1,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의확인서,강사료 지급내역서 등 없음
39	2019	-	ㅁ 진행요원 80천원×30명=2,400천원	2,400	-	① 근무일지 및 근무자 지휘사항 없음
40	2019	-	ㅁ 교실 회의참석수당(A,자부담) 100천원×2회=200천원	200	-	① A 내부직원임에도 회의참석수당 지급
소계		**2020년 인건비**		**2건, 20,280천원**		
41	2020		강사 150천원×80일=12,000천원	12,00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② 강사료 지급내역서 없음
42	2020		메인상담사 120천원×69회=8,280천원	8,280	-	① 원천징수 미이행

자료: ◎과에서 제출한 ㅁ 운영 감사자료를 재구성